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 변화와 방향

책임연구원: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김성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위촉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한국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바뀐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여성가족사적 의미와 운동사적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이슈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도서관 ‘여기’의 소장자료들 중, 여성가족정책사에서 굵직한 획을 그은 주제를 택하여 그 의미를 재조명해오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선정하였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수많은 여성·시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호주제 폐지운동은 ‘가부장성을 극복한 평등한 관계’, ‘개인으로서는 갖는 인권’, ‘다양한 가족의 삶 존중’이라는 지향점을 가진 운동입니다. 이 연구는 호주제 폐지운동이 던진 문제의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와 가족에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가족에 조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가족문화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잔존하는 부계혈통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대신 다양한 가족 이해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가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호주제 폐지운동의 중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 경험과 기억을 기꺼이 공유해주신 구술자와 연구자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호주제 폐지운동의 경험을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가족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강 경희

Contents

I 서 론 _ 0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자료 분석과 활용	3
2) 개인별 신분등록제 10년, 호주제 폐지 운동의 현재적 의미 검토	4
3) 연구 목적	5
2. 연구 방법 및 내용	6
1) 연구 방법	6
2) 연구 내용	8
3) 과제수행체계	10

II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 분석 _ 11

1.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일반 현황	13
2.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해제	18
1) 가족법 개정의 진전과 호주제 문제제기 시기 (~1996)	18
2)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 논의 시기 (1997~2002)	21
3) 호주제 폐지 성공과 대안 논의 시기 (2003~2005)	27

4) 호주제 폐지 운동 정리 시기 (2006~)	39
-----------------------------------	----

III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와 특징 _ 43

1.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 호주제의 문제 요소 45
 - 1) 성 불평등: 남성우선승계와 부가입적제 45
 - 2) 가족 다양성 무시와 “비정상 가족” 낙인 47
 - 3) 식민지 문화 잔재 49
2.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 50
 - 1) 호주제 폐지 운동 발단(1953~1996) 50
 - 2) 광범위한 연대와 대중성 확대(1997~2002) 54
 - 3) 참여정부의 등장과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2003~2005) 57
3.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의의 62
 - 1) 호주제 폐지의 여성가족정책사적 의미 62
 - 2) 호주제 폐지의 운동사적 의미 65

IV 호주제 폐지의 현재적 의미와 정책 개선 방향 _ 75

1. 호주제 폐지 이후, 한계와 극복지점 77
 - 1) 부계혈통주의의 잔존 77
 - 2) 가족 내 불평등 문화의 지속 79
 - 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잔존 81
 - 4) 신분등록제의 한계 83

2. 가족의 현재와 정책 개선 방향	85
1) 부성주의 해체 · 성(姓) 결정 선택권 확대	86
2) 다양한 가족의 이해와 지원	88
3) 개인으로서의 시민권 인식과 가족구성의 선택 존중	95
4)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97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98

참고문헌 _	100
--------	-----

부록 _	105
------	-----

Contents

표 목차

표 I-1	구술자	7
표 II-1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14
표 II-2	1996년 이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19
표 II-3	1997~2002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22
표 II-4	2003~2005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29
표 II-5	2006년 이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39
표 III-1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1948~1996)	52
표 III-2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1997~2002)	56
표 III-3	신분등록제 대안 논의 안 비교	59
표 III-4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2003~2008)	60
표 IV-1	맞벌이가구 가사노동시간(2004~2014)	80
표 IV-2	가구원 수 추이(1970~2017)	88
표 IV-3	가족의 형태별 분포(1990~2015)	89
표 IV-4	비혼 동거가족 관련 해외 제도	93
표 부록-1	성평등도서관 외 호주제 관련 자료 목록(2018.03.13. 기준)-국회도서관 ..	107
표 부록-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목록 <구술아카이브>	121
표 부록-3	성평등도서관 외 호주제 관련 자료 목록(2018.03.14. 기준) -새가정 & 한국여성신학	122

그림 목차

■ 그림 I-1 ■ 연구 목적 및 내용	5
■ 그림 IV-1 ■ 호주제 폐지 운동의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	85
■ 그림 IV-2 ■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2008~2016)	90
■ 그림 IV-3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6)	90
■ 그림 IV-4 ■ 가족정책 개선 방향	98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을 높임
- ☐ 호주제 폐지 운동의 특징과 현재적 의미를 밝힘
- ☐ 호주제 폐지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따른 현 시기 가족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

2. 연구 방법

- ☐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 분석
 - 소장자료 및 추가 수집 자료 분류 및 해제
- ☐ 심층면접
 - 호주제 폐지 운동 핵심 운동가 7인 구술 분석

■ 구술자 ■

이름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성(운동 당시 역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여성부장관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대표
양현아	가족법 연구자
오혜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국회의원

- 가족이슈 당사자 운동단체 대표 2인 면접
- ☐ 문헌조사
 - 호주제 폐지, 가족법 개정, 여성운동사, 가족 변화 관련 연구 및 서울시·중앙정부의 가족정책 관련 문헌

3.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 호주제 폐지 운동 자료 현황

- ☐ 형태별 : 문서(도서, 논문 등) 69개, 비문서(영상, 포스터, 배지 등) 21개
- ☐ 생산자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9개, 개인 27개,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5개, 여성부 및 법무부 9개, 국회 2개, 기타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자료 16개, 생산자 미상 2개
- ☐ 시기별 : 1997년 이전 생산 12개, 1997년~2005년 64개, 2006년 이후 14개

4.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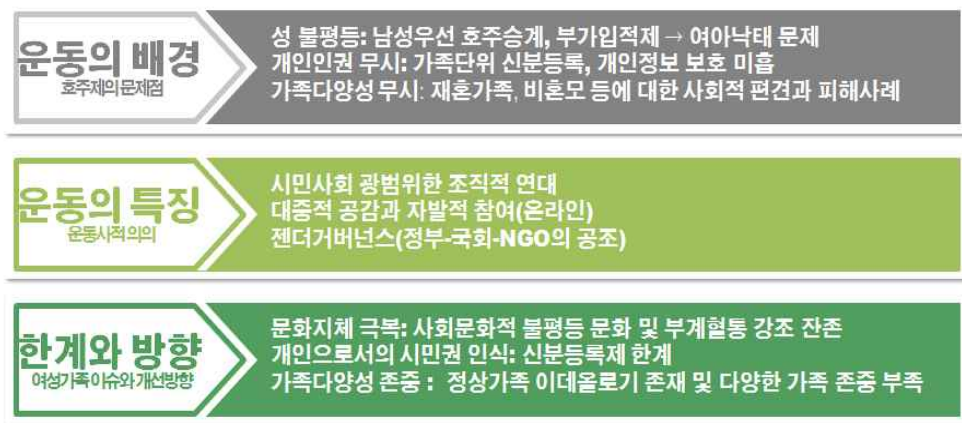
- ☐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 호주제의 문제 요소
 - 성 불평등 :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을 응집한 제도가 호주제로서, **남성 우선 승계**(호주 승계의 순서가 직계비속 남자→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처→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로 되어 있어,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아들 또는 손자가 먼저 승계자가 되는 문제)와 **부가입적제**(여성으로 하여금 결혼과 동시에 남성의 집안으로 강제편입하게 하여, 가족공동체를 만들 때부터 아내는 남자가 주인인 가(家)에 종속되는 불평등한 관계로 출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남아선호와 여아낙태의 폐해를 가져옴
 - 가족 다양성 무시와 “비정상 가족” 낙인 : 자녀의 입적과 부자동성주의의 문제에 따른 피해 사례 만연.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 이혼 후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불합리한 상황, 즉 사망하지도 않은 아이를 사망 신고한 뒤 다시 재혼한 남편의 성에 따라 출생신고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식민지 문화 잔재 : 호주제 폐지 반대 진영에서는 호주제가 오래된 한국 고유의 전통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호주제는 국가에 의한 가(家)제도라는 일본의 제도가 이식된 것으로서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임
- ☐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

- 오랜 시기 가족법 개정 운동 지속(1953~1996) : 1953년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맞추어 가족법 제정 요구 건의서 제출,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 가정법률상담소) 설립 이래 호주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를 해오는데, 호주제 폐지 운동은 세대를 넘어 50여 년간 계속된 운동임
- 광범위한 연대와 대중성 확대(1997~2002) : 1997년 38 여성의 날,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을 기점으로 1998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결성, 1999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요사업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 선정, 이후 시민사회의 연대를 확대강화하면서 대중성을 확대하고 폐지 운동을 본격화함
- 참여정부의 등장과 호주제 완전 폐지(2003~2005) :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시민사회는 광범위한 호주제 폐지 압박과 대안을 논의함. 운동 세력은 구사가능한 운동방식을 총동원하여 호주제 폐지를 추진함.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의의

- 여성가족정책사적 의미
 - 성평등 추구 : 제도적 불평등 완화의 성과
 - 가족 다양성 존중 : 이혼재혼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가족변화가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한 호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
 - 개인의 권리와 존엄 지향 : 개인보다 가족 집단의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가족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기여
- 운동사적 의미
 - 민주화운동과 함께 성장한 여성운동 세대의 등장
 - 온라인의 자발적 연대와 대중적 공감 획득 : 시민 주도의 ‘호폐모’ 등장 등 새로운 운동방식이 출현하고, 다수의 단체/개인 연대활동을 통해 이견 조율
 - 젠더 거버넌스 : 정부국회와 시민사회의 공조 성과(시민운동 주도로 제도권 내부의 협조와 논의 활발), 제도정치 내 여성 행위자들의 증가 필요성 교환

5. 호주제 폐지의 현재적 의미와 가족정책 개선 방향



□ 부계혈통주의의 잔존 → 부성주의 해체 필요

- 부성주의의 경직성이 완화되었으나 가족의 상징적 동일성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음. 특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
- 부계성본주의의 실질적 권리 침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자녀의 성 선택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한국 유보조항 철회, 민법(자녀의 성과 분) 개정 요구됨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잔존 → 다양한 가족 이해와 가족구성권 보장 필요

-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가족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임. 1인가구의 증가 및 가구의 소규모화 등 가족 유형의 변화에 따라 가족변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 변화에 조용하지 못하고 있음. 한부모, 다문화 가족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취약성 보안을 넘어 가족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기존 가족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비혼동거가족, 법률혼 유경험 동거커플, 비성애적 관계의 생활동반자 규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공동체들이 수
술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 보험과 조세 혜택, 경조사 휴
가 사용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
련해야 함

- 가족 개념의 재검토를 통해 법적 정비와 각종 가족 관련 제도와 지원에서 빠뜨
리는 개인/가족유형이 없도록 해야 함

□ 불평등 문화의 지속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필요

- 호주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가부장적 인식은 뿌리뽑히지 않고 있
음. 문화지체로서 가부장성은 명절문화, 가사노동 등 가족생활 전반에서 지속
되고 있음
- 가족 내 젠더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 평등한 젠더모델 발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식 개발, 미디어 모니터링 등을 통한 문제의식 확산이 필요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 여성·가족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극단적 상황을 두고 쓰이는 ‘호적에서 파낸다’, ‘성을 간다’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한국 가부장제의 상징으로 굳건한 자리를 지켜왔던 호주제가 끈질긴 운동의 결과로 결국 폐지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정책사 현장으로서 호주제 폐지 운동의 탐구와 동시에 성평등도서관 자료 활용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기획된 연구로서, 기록과 기억을 통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성·가족 이슈를 통찰하기 위한 것이다.

1)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자료 분석과 활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5년 7월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여기’를 개관하였다. ‘여기’는 서울여성플라자 내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젠더 라이브러리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유관기관의 정책자료, 여성단체 현장의 기록을 모아 정책박람회, 전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운동단체, 운동가 개인,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운동 및 정책 자료의 수집과 공유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사 및 운동사적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소장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자료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 자료축적과 보완, 시민과 연구자의 접근성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연구 시리즈가 기획되었으며, 본 연구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 분석”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근절운동과 여성노동의 현실” (2016년)에 이어 연속 과제의 세 번째 주제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다룬다.

2) 개인별 신분등록제 10년, 호주제 폐지 운동의 현재적 의미 검토

여성가족정책사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은 범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평등한 가족을 향한 상징적·실질적 의미의 성과를 가져온 중요한 사례이다. 호주제는 남성우선 호주승계제도, 여성과 자녀의 부가입적, 이혼·재혼 여성과 그 자녀의 피해를 낳은 대표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강화 기제로 작동했으나, 여성계와 시민운동계가 결집하여 다양한 방식의 운동전략을 활용한 끈질긴 노력 끝에 2005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호주제 논쟁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던 데 비하여 2005년 폐지 이후에 그 과정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기존 논의, 즉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정당성, 그리고 폐지 운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호주제 폐지 운동의 현재적 의미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호주제 폐지라는 단일한 운동 주제로만 보았을 때는 이미 완결된 운동으로서 더 이상 첨예한 논쟁이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호주제 폐지 이후 여전히 진행 중인 가족법 개정과 가족정책 이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2018년은 호주제가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대체된 지 10년을 맞이한 해다. 호주제 폐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시점에서 되짚어보고, 앞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한계, 그리고 호주제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지향했던 핵심 주제들을 뽑아내고, 이 주제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조명하였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내용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가부장성을 극복한 평등한 관계’, ‘개인으로서 갖는 인권과 가치’, ‘다양한 가족의 삶 존중’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가족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이러한 방향을 견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의 존엄성과 가족관계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호주제 폐지 운동의 기반인 동시에 성과이며, 이는 현재 다양하게 재구조화되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정책 방향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 확산이 이혼·재혼·비혼 증가 등으로 인해 호주제가 상징하는 전형적 가족이 더 이상 확고한 주류 가족형태를 이룰 수 없는 현실에 바탕을 두었다면, 호주제 폐지 이후 오늘의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 목적

위와 같은 배경과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둘째, 호주제 폐지 운동의 특징과 현재적 의미를 밝힌다.

셋째, 호주제 폐지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따른 현 시기의 가족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그림 I-1 ■ 연구 목적 및 내용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성평등도서관 ‘여기’의 소장자료 분석과 운동 참여자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살펴보았다.

(1)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 분석

우선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 중 호주제 폐지 운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모아내었는데, 이들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생산자에 의해 기부된 자료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추가로 30여개의 자료를 기증받아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수집된 총 90개 자료를 분류하여 생산시기, 생산주체, 자료형태별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자료를 해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자와 시민들의 자료활용을 위해, 성평등도서관 외 다른 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목록화했다.

(2) 심층면접

성평등도서관의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소장자료의 분량이 적고 단행본·책자 위주이므로 자료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사료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새로 수집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운동참여자들의 구술을 정리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호주제 폐지 운동의 특징과 현재적 의미를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되살리고자 했다. 당시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여성운동, 시민운동, 법조계, 정부, 국회의 활동경험을 고루 들어볼 수 있도록 인터뷰 대상을 선정했으며, 7명의 운동 핵심 참여자 구술사 제공에 동의·참여해 주었다. 수집된 구술사는 검독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성평등도서관에 보관된다.

표 I-1 구술자

연번	이름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성(운동 당시 역할)
1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2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여성부장관
3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4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대표
5	양현아	가족법 연구자
6	오혜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7	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국회의원

조사내용은 크게 ①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 및 경로와 운동에서의 역할, ② 운동의 전개 과정, ③ 운동의 쟁점(이슈, 내부동학 및 갈등, 전략구사방식), ④ 운동의 의미 및 현재 여성·가족정책과의 연관성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정확한 연도, 상세한 사실묘사 등)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이므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고, 사실관계 확인은 문서자료로 가능하므로, 자세한 전개과정보다는 특징에 집중한 평가를 중심으로 면접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참여자 7인이 아직까지 당시 직함 그대로 현역에서 활동 중이거나, 소속과 역할을 바꾸었다라도 여성·가족인권의 영역에서 여전히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경험을 듣는 수준을 넘어 오늘의 시점에서 여성·가족 관련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¹⁾

각각의 인터뷰는 1시간~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집무실,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행해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변형하며 제시하고, 몇몇 참여자들은 본인이 준비해온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일부 자료는 성평등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참여자 전원이 사전에 연구참여 및 구술동의서에 서명했고, 녹음된 파일의 녹취록은 참여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1) 본 연구는 구술자 개인의 삶의 궤적보다는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경험과 기억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본문에서는 운동 참여의 개인적 동기나 소회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개인의 간략한 소개는 부록에 첨부한다.

이 밖에, 현재 가족 관련 쟁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당사자 운동 단체인 한국한부모연합 M 대표와 미혼모협회 C 대표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위의 인터뷰와 공통된 질문(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당시 경험과 운동의 의미) 외에 현재 가족다양성과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역시 연구참여 동의서 서명 후 진행하였으며 녹음 후 녹취록으로 기록하였다. 모든 인터뷰 녹취록은 질적연구방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DeDoose를 사용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3) 문헌조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으나, 크게 호주제 폐지의 내용 측면과 운동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때로 하나의 연구 안에서 동시에 다루어지기도 한다. 운동 당시에 생산된 자료 해제 및 운동 참여자 면접을 통한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의 특징 분석에 이들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밖에 가족법 개정, 여성운동사, 가족 변화 관련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고, 서울시·중앙정부의 가족정책 관련 문헌을 검토했다.

2) 연구 내용

이미 운동단체와 정부 등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의 기록을 담은 백서들을 발간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실의 기술로 중복적인 연구를 보태기 보다는 운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 현재적 의미화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성평등 도서관 자료 현황을 소개하고, 각각의 자료 정보와 내용을 풀어 정리했다.

다음 장에서는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운동의 내용적 배경이 된 호주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호주제 폐지 운동 진영의 활동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앞 장의 소장자료 해제와 연결하여 핵심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당시 운동의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주제 폐지 운동이 갖는 정책사적 의미와 운동사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호주제 폐지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 가족 전망을 논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호주제 폐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한계점, 즉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이어, 호주제 폐지 운동의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들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3) 과제수행체계



II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 분석

1.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일반 현황
2.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해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 분석

1.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일반 현황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관련 자료 수는 총 90개로, 토론회 자료집, 대국민 홍보물, 연구보고서, 법정 자료를 포함한다. 형태별로는 도서, 논문 등을 포함한 문서 형태의 자료가 69개로 대부분이며, 영상, 포스터, 뱃지 등의 비 문서 자료는 21개이다.

생산자별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가 29개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 개인 생성 자료 27개,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자료 5개, 여성부 및 법무부 자료 9개, 국회 자료 2개, 기타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자료 16개, 생산자 미상 자료 2개가 있다.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1997년 이전에 생산된 자료는 12개, 호주제 폐지 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전개되었던 1997부터 호주제가 폐지된 2005년까지의 자료가 64개로 가장 많으며, 이 시기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1997년~2002년과 2003년~2005년)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정리시기 나온 자료는 14개가 소장되어있다.

표 II-1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일련번호	제목	생산시기	생산자	형태
1	민법 제4편 친족제5편 상속 개정법안 및 이유서	1974년 8월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	문서
2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1984년 3월	여성평우회	문서
3	캠페인 배지	1984년 8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비문서
4	다 같은 인간이다	1984년 8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문서
5	가족법을 개정합시다	1984년 8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비문서
6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1984년 9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문서
7	민법 제4편 친족제5편 상속 개정법안	1984년 10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문서
8	캠페인 리본	1984년 11월 29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비문서
9	다 같은 사람인데 (연극공연 브로슈어)	1986년 6월 21일~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문서
10	가족 연구의 관점과 쟁점	1988년 8월	이효재 편, 까치	문서
11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1992년 1월 25일	이태영 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0년사	1993년 7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문서
13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9년 4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문서
14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1999년 1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	문서
15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2000년 8월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문서
16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2000년 10월 25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문서
17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배포엽서 1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18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2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19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3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20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4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21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5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22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6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23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7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24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8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25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9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일련번호	제목	생산시기	생산자	형태
26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10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27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11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비문서
28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결정	2001년 3월 31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문서
29	2001헌가10 (민법 제781조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의견서	2001년 7월	법무법인 덕수	문서
30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001년 12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최대권 외 3명), 여성부	문서
31	호주제 바로알기	200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문서
32	가정상담 222호	2002년 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33	우리 평등하게 살래?!	2002년 6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문서
34	가정상담 227호	2002년 7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35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2002년 9월	국회여성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용역수행)	문서
36	우리 평등하게 살래?!	2002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문서
37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주최 토론회 “새로운 신분등록제 -가족부인가, 일인일적인가?”	2003년 4월 21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문서
38	민법증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2003년 5월 27일	국회의원 이미경 외 52명	문서
39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2003년 6월 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문서
40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 더 나은 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2003년 6월 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41	가족과 호주제	2003년 7월 4일~8월 31일	여성부	비문서
42	가정상담 240호	2003년 8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43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2003년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문서
44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	2003년 8월	김성숙 외 2명 연구, 여성부	문서
45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	2003년 9월 25일	법무부·여성부	문서
46	우리 평등하게 살래?! : 호주제 없는 21세기를 위하여	2003년 9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47	가족정책토론회: 성인지적인	2003년 10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서

일련번호	제목	생산시기	생산자	형태
	가족정책을 모색한다	22일	복지위원회	
48	가정상담 242호	2003년 10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49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서등	2003년 11월 30일	서차수	문서
50	가정상담 243호	2003년 1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51	민법개정안 설명자료 - 호주제 관련 -	2003년 11월	여성부	문서
52	의견서	2003년 12월 12일	최재천	문서
53	현대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와 호주제도의 문제점	2003년 12월 15일	양현아	문서
54	법률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참고인 의견서	2003년 12월 22일	구상진	문서
55	호주제도에 대한 의견서 - 호주제도가 우리의 전통가족제도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김상용	문서
56	가정상담 244호	2003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57	호주승계제도에 관하여	2003년 추정	미상	문서
58	참고인 최재천에 대한 신문사항	2004년 1월	이정희	문서
59	참고인 양현아에 대한 신문사항	2004년 1월	이정희	문서
60	참고인 구상진에 대한 신문사항	2004년 1월	서차수	문서
61	참고인 의견서에 대한 이해관계인 신문사항	2004년 1월	구상진	문서
62	법률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의견서	2004년 3월	구상진	문서
63	민법중개정법률안(民法中改正法律案)	2004년 7월	이경숙 의원	문서
64	민법중개정법률안(民法中改正法律案) (3건)에 대한 의견서(안)	2004년 7월	한국여성위원회	문서
65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	2004년 8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최재천 외 4명),여성부	문서
66	가정상담 253호	2004년 9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67	가정상담 254호	2004년 10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68	가정상담 256호	2004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69	호주제 폐지 추진	2004년	여성부	문서
70	- 호주제 폐지 추진 - 민법개정안 설명자료	2004년	여성부	문서
71	헌법재판소 의견서	2004년 추정	미상	문서

일련번호	제목	생산시기	생산자	형태
72	“목적별 공부에 대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안”에 대한 평가 —주민등록제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04년 추정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문서
73	호주제 폐지 대비 신분등록제도안	2005년 1월 26일	법무부	문서
74	가정상담 257호	2005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75	알기쉬운 호주제 폐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향하여 ~차별의 굴레를 벗고 평등의 시대로~	2005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76	법안해설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2005년 9월	민주노동당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 한공동행동	문서
77	신분관계의증명및등록에관한법률(대법원안) 분석평가	2006년 추정	윤현식(민주노동당)	문서
78	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호적(부)’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2007년 8월 1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문서
79	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2008년부터 ‘호적(부)’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2007년 8월 1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80	호주제 폐지 운동 백서 (1997-2005)	200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서
81	가정상담 293호	2008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82	가정상담 295호	2008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83	가정상담 296호	2008년 4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84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1948-2008)	2009년 10월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8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2009년 10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
86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1	2003년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문서
87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2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문서
8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50주년 기념 홍보영화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문서
89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2011년 12월	양현아	문서
90	호주제 폐지 기록과 기억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문서

2.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해제

1) 가족법 개정의 진전과 호주제 문제제기 시기 (~1996)

성평등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생산시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대중적 호주제 폐지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부모성 함께쓰기운동 선언이 있었던 199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자료들을 보면, 호주제를 포함하여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초기 자료들과 대시민 홍보물들이 있다. 가장 오래된 소장자료는 1974년에 범여성 가족법개정추진회의가 만든 ‘민법 제4편 친족·제5편 상속 개정법안 및 이유서’로, 개정되어야 할 법률과 이유를 기재한 자료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9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대중운동과 자료생산이 이루어진 시기의 호주제 폐지 근거 자료들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내용들, 즉 관련 제도의 역사, 성차별적 요소, 개정방향이 7~80년대 자료에서도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여성평우회에서 만든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의 관련제도 성격분석, 가족법의 성차별, 가족법개정사와 찬반 양측의 논리,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 소개되어 있다. 같은 해 생산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에서도 호주제도의 역사 및 신헌법과 호주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역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에서 만든 ‘민법 제4편 친족·제5편 상속 개정법안’도 현행법의 문제와 개정안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또한 이 시기에 호주제를 포함하여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음을 포스터, 전단지, 배지, 리본 등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족법이 가진 성불평등성에 대해 ‘다 같은 인간이다’라는 표어와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포스터와 ‘가족법 개정합시다’ 배지 및 리본이 남아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공연 ‘다 같은 사람인데’ 팸플렛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연은 남녀를 차별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가족법이 2세대에 걸쳐 야기한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표 II-2 1996년 이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1	민법 제4편 친족·제5편 상속 개정법안 및 이유서	자료 집		1974년 8월	범여성· 가족법 개정촉 진회	민법 제4편 친족·제5편 상속 개정법안 주요 골 자, 개정되어야 할 법률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2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자료 집		1984년 3월	여성평 우회	통일신라시대부터 대한 제국 전후까지의 호 관 련 제도 성격 분석, 가족 법과 성차별 사례, 가족 법개정 관계 자료 요약 (가족법개정의 역사, 찬 성측 및 반대측 운동연 혁, 가족법 개정 찬반 입 장, 개정된 가족법, 개정 되지 않은 조항).	이경숙 기증
3	캠페인 배지	기타		1984년 8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 합회	‘가족법 개정합시다’ 캠페인 배지.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4	다 같은 인간이다	포스 터		1984년 8월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다같은 인간이다”라는 표어로 가족법의 개정 홍보. 포스터 뒷면에는 가족법개정 근거와 방 향을 설명.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5	가족법을 개정합시다	전단 지		1984년 8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 합회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6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 전봉덕	제본 논문		1984년 9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 합회	대한변호사협회지 1982 년 10월호(통 권81호) 게재. 호주제도의 역사, 현행법과 호주제도, 호 주권의 성립, 신헌법과 호주제도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7	민법 제4편 친족·제5편 상속 개정법안	자료 집		1984년 10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 합회	민법중 개정법률안, 개 정안 제안 이유, 개정되 어야 할 법률의 주요 골 자, 현행법과 개정안 대 비표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8	캠페인 리본	캠페 인용 품		1984년 11월 29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 합회	‘가족법 개정합시다’ 캠페인 리본.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9	다 같은 사람인데 (연극공연 브로슈어)	팸플 렛		1986년 6월 21일~2 2일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 립 30주년 기념공연 “다 같은 사람인데” 공연 팸 플렛. 남녀를 차별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가족법이 2세대에 걸쳐 야기한 가정의 비극. 개 정되어야 할 가족법 항 목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10	가족 연구의 관점과 쟁점	단행 본		1988년 8월	이효재 편, 까치	가족 연구의 관점(고전 사회학의 가족이론과 파 슨스의 핵가족론, 좌파 가족론 등 7개 장), 가족 연구의 쟁점(가족의 존 재 여부, 가내 재생산,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등 7개 장)	허순희 기증
11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단행 본		1992년 1월 25일	이태영 저,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1948년부터 1989년까 지 가족법 개정운동 역사 및 자료 수록. 1) 1단계 신민법 제정과 가족법 개 정운동(1948~1970), 2) 2단계 유신헌법 시대와	오혜란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가족법 개정운동 (1971~1979), 3) 3단계 남녀평등시대의 장을 열며(1980~1989). 4) 건의문 등	
12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30년사	자료 집		1993년 7월	한국여 성단체 협의회	1959~1970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중 2차 가족법 개정운동 포함	오혜란 기증

2)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 논의 시기 (1997~2002)

1997년부터 2002년(김대중 정부)까지의 자료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료유형은 연구보고서와 토론회 자료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이 시기 대중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서명지, 홍보물, 행사 사진 등)은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의 한계로 보이며,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에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소장자료 중 가장 오래된 1999년 4월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주관), 1999년 11월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특별위원회),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토론회 자료집(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주관)은 모두 당시 토론회 자료집으로, 호주제도의 문제점 비판과 폐지의 당위성, 그리고 이후 운동방향과 폐지 후 대안을 수록하고 있다. ‘전통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전략’ 과 같이 호주제 존속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와 논쟁전략이 생산되기도 한다.

토론회 자료집들을 통해 당시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토론회를 통한 호주제 비판과 폐지 당위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면, 2000년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펴낸 보고서 ‘호주제 폐지 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을 통해서도 호주제 폐지에 관한 국회 내부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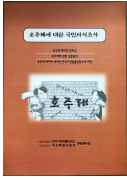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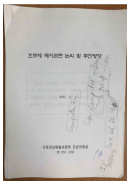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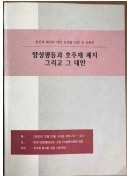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호주제의 문제점, 대안, 외국의 신분등록제, 호주제 폐지 추진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국회 여성위원회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용역의뢰하여 만든 연구보고서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도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폐지를 위한 전략, 폐지 이후를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여성부에서도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를 진행, 발간하였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한 축이었던 위헌제청 관련 법률문서도 이 시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결정’, ‘2001헌가10(민법 제781조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의견서’가 그것이다. 의견서에는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호주제의 위헌성, 호주제 폐지 반대론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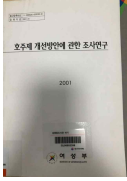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활동들 외에, 광범위한 대중들을 상대로 펼쳐진 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캠페인에 사용된 아이템들이 그것인데, 일러스트레이터 정강의선이 활동가 고은광순과 함께 만들어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에서 배포했던 엽서 시리즈(2000)는 각각 불평등한 남녀의 지위, 순수혈통과 성씨의 무의미함, 호주승계의 불합리성, 여아낙태와 성비 불균형, 제사와 명절의 불평등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우리 평등하게 살래!!’라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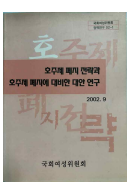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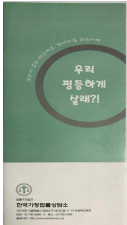
【 표 II-3 】 1997~2002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1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 회자 료집		1999년 4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대한여한의 사회, 호주제폐지 를 위한 시민모임	1) 주제발표문: 호주 제도 비판(김주수, 박 소현), 2) 토론문: 호 주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 및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방향,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전통 주의자”들에 대한 비 판과 전략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2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 사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토론 회자 료집		1999년 11월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여성특별위 원회	호주제 폐지의 당위 성, 호주제에 관한 설문분석, 호주제 폐 지에 대비한 대안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3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보고 서		2000년 8월	국회여성특 별위원회 전문위원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 동 지원을 위한 현안 분석 보고서. 호주제 관련 논의 및 문제점 분석,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대안(대안 적 호적제도), 외국의 호적제도 및 신분기록 제도, 호주제 폐지의 추진방향	양현아 기증
4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토론 회 자료 집		2000년 10월 25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1) 헌법과 호주제, 2) 양성평등의 법적 장 애: 호주제, 3)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 다(II), 4) 현 호주제 도의 실무상 문제점, 5) 호주제도의 폐지 와 호적 편제 발표문 및 토론문.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5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배포엽서 1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시대별 남녀 지위의 흐름 그래프	고은광순 기증
6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2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성씨의 무의미함 (영문)	고은광순 기증
7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3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성씨의 무의미함 (국문)	고은광순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8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4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아들, 손자의 호주승 계 풍자	고은광순 기증
9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5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순수 혈통의 무의미 (영문)	고은광순 기증
10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6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순수 혈통의 무의미 (국문)	고은광순 기증
11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7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부계혈통의 비논리성	고은광순 기증
12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8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여아낙태 문제	고은광순 기증
13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9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여아낙태와 성비 불 균형 (영문)	고은광순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14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10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여아낙태와 성비불균 형 (국문)	고은광순 기증
15	호주제폐지 서명 시 배포 엽서 11	엽서		2000년	정강의선, 고은광순	제사와 명절의 성불 평등	고은광순 기증
16	위헌제청신 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결정	문건		2001년 3월 31일	서울지방법 원 북부지원, 서 부지원	2000호 파1886 위 헌제청신청 등에 대 한 서울지방법원 서 부지원 및 북부지원 의 위헌제청결정문	양현아 기증
17	2001헌가 10 (민법 제781조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의견서	문건		2001년 7월	법무법인 덕수	2001헌가10 민법 제 781조 제1항 본문 후 단부분 위헌제청(관 련사건 2001헌가 9) 관련 의견서. 호주제 내용과 폐해, 호주제 의 연혁과 해방후의 민법 제정·개정과정, 호주제의 위헌성, 호 주제 폐지 반대론에 대한 의견, 호주제 폐 지 이후의 대안	양현아 기증
18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 보고 서		2001년 12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대권 외 3명), 여성부	1) 호주제도의 연혁, 2) 호주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여성 및 자녀의 부가입적(夫家入籍), 직계비속 및 이혼 우선 승계, 법적 강제로서의 호주제)	이정숙 기증
19	호주제 바로알기	팸플 렛		2001년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성차별 조장·평등한 가족관계 위배·다양 한 가족형태 불인정· 우리 고유의 역사성 부재의 근거를 들어 호주제 폐지의 타당성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20	가정상담 222호	연속 간행 물		2002년 2월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기관 지. 특집 기사 ‘민법 개정안 공청회 - 친 양자제도를 중심으 로’, 연중기획: 호주 제 폐지를 향하여 수 록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21	우리 평등하게 살래?!	비디 오 (VHS)		2002년 6월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정당성 홍보 비디오. 성불평 등, 가족불평등, “비 정상”가족 피해 생 산, 전통제도 허구성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22	가정상담 227호	연속 간행 물		2002년 7월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기관 지. 연중기획: 호주제 폐지를 향하여(호주 제폐지 관련 활동 및 소식 소개) 수록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23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연구 보고 서		2002년 9월	국회여성위 원회, 한국가정법 률상담소(용 역수행)	1)호주제 폐지의 당위 성, 2)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략, 3)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 제도 개선방안, 4)호 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 개선방안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24	우리 평등하게 살래?!	브로 슈어		2002년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촉진을 위한 홍보용 리플렛.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호주제 폐 지에 대한 국민여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오해, 호주제 폐지 후 변화	한국가정 법률상담 소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3) 호주제 폐지 성공과 대안 논의 시기 (2003~2005)

참여정부가 등장한 2003년 이후부터 폐지가 선언된 2005년까지의 자료들은 호주제 폐지의 결정적인 국면에 생산된 만큼 위헌소송과 관련된 법률문서들과 대안적 신분등록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당시 법률공방의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송관련 자료들이 있다. 2003년 발간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각종 소송기록, 헌법재판기록 등을 모은 데 더하여 운동일지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을 수록하였다. 호주제에 관한 각 전문분야별 신문사향은 이정희가 제시한 신문사향들에 담겨있으며, 폐지 근거를 담은 의견서로 최재천(2003)의 부계혈통주의에 관한 생물학적 전문의견, 양현아(2003)의 법사회학적 의견이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선미, 이정희, 구상진 변호사의 질문 및 답변이 담긴 ‘헌법재판소 의견서’ (2004추정)이 있다.

다른 한편, 호주제 존속을 원하는 입장에서 제시된 자료들도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서’ (2003)는 호주제 존속을 원하는 입장, 즉 성균관장과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의 의견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소송대리인 구상진)의 이해관계인 신문사향과 의견서들이 호주제의 문화적 의미, 부계혈통제도 강조 등을 통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록하고 있다.

소송관련 문서들 외 이 시기 자료들의 주된 내용은 호주제 폐지 이후 제도의 대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신분등록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냐는 물음에 이전부터 대응해왔으나 이 시기부터 더욱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

들어가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가족부와 개인별 신분등록부 사이의 논쟁 가운데, 일인 일적 실현 공동연대가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신분등록제-가족부인가, 일인일 적인가’는 개인별 신분등록부의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심포지엄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 더 나은 제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가족별 편제방안과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관한 연구 발표문을 싣고 있다. ‘“목적별 공부에 대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 안”에 대한 평가’(윤현식, 2004추정) 역시 목적별 공부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 자료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가족정책토론회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다’는 호주제를 넘어 가족정책의 성 인지성을 논의하여 가족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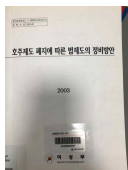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안들도 이 시기 자료에 포함된다. 국회의원 이미경이 대표발의 한 민법중개정법률안(2003)에 이어, 국회의원 이경숙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2004)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 개념의 삭제 및 자녀의 성과 본은 부부 협의로 결정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국회의 법률개정과 함께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들도 이 시기 자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역시 제도 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성부의 연구보고서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2003), 법무부여성부의 ‘민법(친족편)개정안’(2003) 공청회 자료집, 여성부의 ‘민법개정안 설명자료’(2003, 2004), ‘호주제 폐지 추진’ 보고서(2004)가 그간의 추진경과와 개정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법무부의 ‘호주제 폐지 대비 신분등록제도안’은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를 제시하고 그 개선효과와 추진일정까지 제안한다. 나아가 여성부가 의뢰한 연구 보고서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2004)는 호주제 폐지가 한국사회의 경제, 복지, 노동 시장, 남성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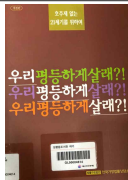
이밖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기관지 ‘가정상담’은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관한 입장과 논리,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상담소 활동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어, 이 또한 호주제 폐지 운동을 기록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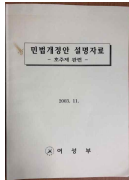
【표 II-4】 2003~2005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1	새로운 신분등록제 -가족부인가, 일인일적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3년 4월 21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1)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비교(진선미), 2) 가족부와 개인별 신분등록부의 모델 제시(고은광순), 3) 가족부와 일인일적제의 사회적 효과(최현숙), 4) 일인일적제도 도입과 여성 복지(엄규숙) 발표문	양현아 기증
2	민법중개정 법률안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문건		2003년 5월 27일	국회의원 이미경 외 52명	이민경의원 외 52명에 의해 발의된 민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민법중개정법률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양현아 기증
3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브로슈 어		2003년 6월 5일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초대장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4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 더 나은 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토로노 회자료 집		2003년 6월 5일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기조강연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곽배희)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 가족별 편제방안’(김상용),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정현수) 발표문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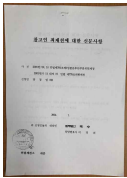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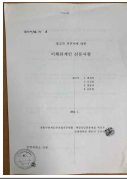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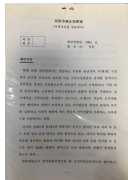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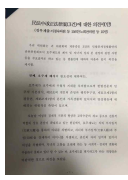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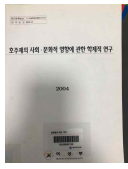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5	가족과 호주제	리플렛		2003년 7월 4일~8월 31일	여성부	제8회 여성주간 기념 특별전시회 “가족과 호주제: 호주제 폐지, 행복한 가족으로 가는 지름길” 리플렛.호주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호주제 문제점 등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6	가정상담 240호	연속 간행물		2003년 8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호주제폐지운동 관련 지부 소식·활동보고에 일부 삽입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7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자료집		2003년 8월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복 지위원회	1)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2)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호주제폐지론, 소송기록, 헌법재판기록 등), 3) 호주제 폐지 이후 제도(민법 개정안,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등), 4) 개정법률안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증
8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		2003년 8월	김성숙 외 2명 연구, 여성부	1) 호주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현황, 2) 호주제 폐지 시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3) 호주제도의 정비방안	이경숙 기증
9	민법(친족편)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3년 9월 25일	법무부 여성부	민법(친족편) 개정안 공청회 자료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김상용), ‘호주제 폐지와 21세기의 가족’(곽배희), ‘민법중개정법률안	양현아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구상진), '호주제 폐지는 한국 사회의 인권과 평등의 척도이다'(이경숙), '『호주와 가족』의 전면적 폐지안의 불합당성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와 가족의 전면 폐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정환담), '호주제 폐지에 관한 토론자료'(진선미)	
10	우리 평등하게 살래?! : 호주제 없는 21세기를 위하여	자료집		2003년 9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 피해자들의 목소리,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와 과제	차인순 기증
11	가족정책토론회: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다	자료집		2003년 10월 22일	한국여성 단체연합 복지 위원회	'성인지적 가족정책의 방향과 비전'(황정미),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성인지적 가족정책'(김혜경), '한국의 가족정책 진단과 행정체계'(송다영) 발표문 및 토론문	
12	가정상담 242호	연속간 행물		2003년 10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이달의 메시지 '지금 21세기 맞습니까?: 언제까지 '호주제'에 발목잡혀 있어야 하는지...'. 상담소 활동 소식 쪽지에서 호주제폐지 평등가족실현 시민한마당 사진 소개.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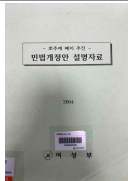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13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서등	문건		2003년 11월 30일	서차수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후단 및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에 대한 성균관장의 의견,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의 의견서, 2003.11.13.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민법개정안(2003.11.6. 자 정부발의)에 대한 구상진 변호사 의견, 법무과의 호주제 폐지 등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한국유교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수록	양현아 기증
14	가정상담 243호	연속 간행물		2003년 11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호주제 폐지: 이제 국회통과만 남았다' 수록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15	민법개정안 설명자료 - 호주제 관련 -	보고서		2003년 11월	여성부	1. 호주제폐지 추진 경위, 2. 호주제의 문제점, 3. 민법개정 주요사항, 4. 호주제 폐지관련 주요 쟁점사항 기타 참고자료	양현아 기증
16	의견서	문건		2003년 12월 12일	최재천	2001 헌가9, 10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 제청, 2001 헌가 11, 12, 13, 14, 15 민법 제778호 위헌 제청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의해 호주제도의 전제인 부계혈통주의의 과학적 근거 유무 및 호주제의 존폐에 관한 생물학적 전문 의견 제출	양현아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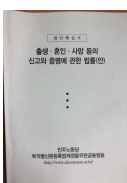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17	현대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와 호주제도의 문제점	문건		2003년 12월 15일	양현아	헌법재판소 참고인의견.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과 호주제의 문제점	양현아 기증
18	법률위헌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참고인 의견서	문건		2003년 12월 22일	구상진	2001헌가 9, 10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및 2001헌가 11, 12, 13, 14, 15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에 관한 구상진 변호사 의견서. 호주제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지지도, 호주제가 일제잔재로서 청산되어야 할 문화라는 주장에 관한 반론, 호주제폐지가 가족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부계혈통제도가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양현아 기증
19	호주제도에 대한 의견서 - 호주제도가 우리의 전통가족제도 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문건		2003년 12월	김상용	호주제가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임을 주장	양현아 기증
20	가정상담 244호	연속간 행물		2003년 12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특별기고 '호주제에 관한 논의자료(호주제에 관한 논의의 출발, 민법상 호주에 관한 규정의 존속이 필요한가?, 가족제도의 중립성, 호주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 자녀의 성과 본)'. 민법중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21	호주승계제도에 관하여	문건		2003년 추정	미상	호주승계제도에 대해 참고인 김상용의 의견서에 대한 정가련(정통가족제도수 호범국민연합, 소송대리인 구상진변호사) 신문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양현아 기증
22	참고인 최재천에 대한 신문사항	문건		2004년 1월	이정희	2001헌가9, 10 민법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및 2001헌가 11 내지 15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에 대하여 참고인 최재천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신문사항.	양현아 기증
23	참고인 양현아에 대한 신문사항	문건		2004년 1월	이정희	2001헌가9, 10 민법제781조제1항본문 후단부분위헌제청 및 2001헌가 11 내지 15 민법 제778조위헌제청에 대하여 참고인 양현아에 대한 법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신문사항	양현아 기증
24	참고인 구상진에 대한 신문사항	문건		2004년 1월	서차수	2001헌가9.10. 및 2001헌가 11내지15.에 대한 참고인 구상진에 대하여 13개 신문사항	양현아 기증
25	참고인 의견서에 대한 이해관계인 신문사항	문건		2004년 1월	구상진	헌법재판소 참고인 최재천, 김사용, 양현아, 김준원의 의견서에 대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 연합 신문사항	양현아 기증
26	법률위헌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의견서	문건		2004년 3월	구상진	2001헌가 9, 10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2001헌가 11, 12, 13, 14, 15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에 대한	양현아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정총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의 의견. 호주제가 과연 일제잔재인가에 관한 의견, 호주제 논의의 문화적 의미에 관한 의견, 부계혈통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의견,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 의식에 관한 의견, 본건 위헌논의에 관한 법률적 의견 기타 관련 자료 첨부	
27	민법중개정법률안(民法中改正法律案)	문건		2004년 7월	이경숙 의원	2004년 8월 발의한 이경숙 의원의 민법중개정법률안. 호주제 폐지, 가족 개념의 삭제 및 자녀의 성과 본은 부부 협의로 결정, 동성동본근혼제도 폐지 촉구	이경숙 기증
28	민법중개정법률안(民法中改正法律案)(3건)에 대한 의견서(안)	문건		2004년 7월	이경숙 의원	정부제출·이경숙의원 등156인·노회찬의원 등 10인에 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호주제 폐지 후 가족 개념 규정 필요 여부,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사항,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 여성의 재혼금지기간(6개월) 삭제, 친생부인의 소(訴) 관련 사항	이경숙 기증
29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	연구 보고서		2004년 8월	서울 대학교 여성 연구소 (최재천 외 4명),	1) 국가-사회의 관계 속에서 호주제가 가족문화에 미치는 영향, 2) 한국 남성들의 삶에 대해 갖는 호주제의 의미, 3) 호주제 폐지와	이경숙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여성부	노동시장의 변화, 4) 호주제 폐지와 경제생활(조세제도 중심), 5) 호주제의 한국복지체계에 대한 영향, 6) 호주제 폐지와 한국 남성의 삶	
30	가정상담 253호	연속 간행물		2004년 9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이달의 메시지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아의 호주제 폐지 찬성을 적극 환영하며”. 특별기획 2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조사 결과’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31	가정상담 254호	연속 간행물		2004년 10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우리는 호주제 폐지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첫 걸음, 호주제 폐지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회에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통과 촉구 편지보내기 홍보. 이달의 메시지 ‘이 시대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수록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32	가정상담 256호	연속 간행물		2004년 12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2004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내용 수록. 특별기획 ‘양성평등·부부평등·자녀복리를 위한 민법(가족법) 개정 제안 (Ⅱ) - 부부재산제 개선①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선”. 이달의 메시지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호주제 폐지와 상담소 회관 건축의 그 날을 향해’	
33	호주제 폐지 추진	보고서		2004년	여성부	1) 호주제 폐지 추진 경위, 2) 민법 개정 추진(민법개정안, 개정안의 의의 및 주요 쟁점사항, 국회 여성위 및 법사위 검토보고), 3) 위헌 법률 심판 관련자료(위헌법률심판 사건 재청현황, 여성부의견서, 법무부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의원서, 참고인 진술서), 4) 언론보도 및 관련 통계	이경숙 기증
34	- 호주제 폐지 추진 - 민법개정안 설명자료	자료집		2004년	여성부	민법 개정의 추진 경위, 호주제의 문제점, 민법개정 주요사항, 호주제 폐지관련 주요 쟁점사항	이경숙 기증
35	헌법재판소 의견서	문건		2004년 추정	미상	호주제폐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진선미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 구상진 변호사 질문 및 답변	양현아 기증
36	“목적별 공부에 대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 안”에 대한 평가 -주민등록제도 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		2004년 추정	윤현식 (민주 노동당 정책 연구원)	현행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의 특징, 주민등록법의 전제로서 호적법, 법조문 상의 주민등록법과 호적법과의 관계, “개인별신분등록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의 목적별 공부제의 특징, 목적별 공부제 도입과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양현아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37	호주제 폐지 대비 신분등록 제도안	보고서		2005년 1월 26일	법무부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 개요(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개선효과, 추진일정	양현아 기증
38	가정상담 257호	연속 간행물		2005년 1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새해 메시지 '새역사가 시작됩니다: 호주제 폐지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축'. 특집 '호주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5차(최종)변론, 이해관계인 변론(요약)(광배회소장 변론 요약계제)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39	알기쉬운 호주제 폐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향하여 ~차별의 굴레를 벗고 평등의 시대로~	소책자		2005년 3월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 호주제 폐지 운동의 과정,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기증
40	법안해설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보고서		2005년 9월	민주 노동당 목적별신 분등록법 제정을위 한공동 행동	1.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이해, 2.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3. 각 증명서의 양식의 예, 4. 각 증명서가 현실에서 쓰이는 예, 5. 현행 호적법과의 조문 비교표, 6.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 을위한공동행동] 소개	양현아 기증

4) 호주제 폐지 운동 정리 시기 (2006~)

호주제 폐지가 선언된 직후 자료들은 크게 첫째, 그간의 운동 발자취를 모은 백서 등의 기록, 둘째, 법률개정을 홍보하는 자료로 나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 폐지 운동 백서(1997-2005)’를 통해 폐지 운동의 경과와 성공요인, 남은 과제, 호주제 폐지와 입법운동 내용,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활동내용, 각계 축하 메시지 및 성명서와 사진자료들을 정리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도 1956년부터 2008년까지의 상담소 활동 가운데 일부를 할애하여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내용을 정리했고, 같은 해에 발간한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1948-2008)’은 상담소의 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여성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과 학계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 밖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주년 기념 홍보영화에도 호주제 폐지 과정이 담겨있다. 최근 자료로는 2018년 서울여성플라자 ‘여기로’ 조성 기념 전시회 자료 “호주제 폐지 기억과 기록”이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제도 변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소책자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호적(부)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를 만들어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관지 ‘가정상담’에 계속해서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Q&A를 연재하였다.

■ 표 II-5 ■ 2006년 이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1	신분관계의 증명 및 등록에 관한 법률(대법원안) 분석평가	보고서		2006년 추정	윤현식 (민주노동당)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4조정위 정책연구원)의 신분관계의 증명 및 등록에 관한 법률(대법원안) 조문의 구성, 특징, 문제점	양현아 기증
2	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호적(부)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팸플렛		2007년 8월 15일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목적별 증명서의 종류 및 가족사항, 자녀의 성과 본, 친양자 관련 내용 설명, Q&A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3	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 법 :2008년부터 '호적(부)'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소책자		2007년 8월 15일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목적별 증명서의 종류 및 가족사항, 자녀의 성과 본, 친양자 관련 내용 설명, Q&A.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4	호주제 폐지 운동 백서 (1997-2005)	자료집		2007년	한국여 성단체 연합	호주제도 폐지운동 경과와 성공요인, 남은 과제, 호주제 폐지와 입법운동 내용,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활동내용(연도별 활동 내용), 각계 축하 메시지, 활동자료, 각종 성명서 및 의견서, 사진자료 수록	한국여 성단체 연합 기증
5	가정상담 293호	연속간 행물		2008년 1월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Q&A 포함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6	가정상담 295호	연속간 행물		2008년 3월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이달의 메시지 '성(姓)변경과 친양자제도 도입의 취지는 자녀복리 위한 것: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을 보며'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7	가정상담 296호	연속간 행물		2008년 4월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Q&A'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8	가족법개정운 동 60년사 (1948-2008)	단행본		2009년 10월	이태영,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1-6차 가족법개정 운동의 역사 기록, 호주제 폐지를 위한 상담소의 개정 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여성단체와의 연대, 학계의 활동사항, 성명서, 의견서, 제안서 등 관련 자료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9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50년사 -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단행본		2009년 10월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1956년~2008년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활동 기록. 호 주제폐지운동 관련 내용은 p.178~183에 집중 소개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10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1	단행본		2003년 8월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 인권 위원회	1)호주제 폐지 운동 일지, 2)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 송, 3)호주제 폐지 이유, 4) 개정 법률안 관련 자료 및 재판기록, 연구물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증
11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2	단행본		2009년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 인권 위원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 자 료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 한 평석 수록.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증
1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창립 50주년 기념 홍보영화	DVD		2009년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1956년 이후 상담소에서 행했던 활동을 영상으로 기 록. 호적등본을 폐지하기까 지의 과정	한국가 정법률 상담소 기증
13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단행본		2011년 12월	양현아	페미니즘 관점에서 ‘관습’ 과 ‘전통’을 재조명. 가족법 의 근 100년에 걸친 제정과 개정 과정을 조명하여 식민 유제 청산과 실질적으로 양 성평등한 법제 구현을 모 색. 제8장에 호주제 폐지운 동 집중 논의	

일련 번호	제목	형태	사진(표지)	생산 시기	생산자	내용	비고
14	호주제 폐지 기록과 기억	전시회 도록		2018년	서울시 여성가 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여기로’ 조성기념 전시 “호주제 폐 지” 전시물수록. 호주제 폐 지 운동의 역사를 사진 중심 으로 전시	

III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와 특징

1.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 호주제의 문제 요소
2.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
3.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의의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와 특징

1.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 호주제의 문제 요소

1) 성 불평등 : 남성우선승계와 부가입적제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 편제’와 ‘호주를 통한 가계 계승’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 기반한 상징적 제도이다. 호주에 대해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과거 민법 제778조에 규정되어 있어, 호주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대표하며,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이는 성평등 가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중요시되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호주제의 문제점이자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먼저 성차별의 요소를 꼽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을 응집한 제도가 호주제라는 인식이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 상에 남녀차별, 부부차별의 조항들이 많고, 그 남녀차별, 부부차별이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근원적인 조문이 뭔가 하면 바로 호주제였어요.(곽배희)

먼저, 호주제의 성차별성은 호주승계를 남성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호주가 사망하면 1개월 이내에 호주승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승계의 순서가 직계비속 남자→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처→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로 되어 있어,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아들 또는 손자가 먼저 승계자가 된다. 만약 장남 남편, 시아버지의 순으로 사망할 경우 시동생이 호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결국 여성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호주의 권한이 시간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허울만 남았다고 보다는 실제로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토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차별을 가족 내에서 겪지 않았던 이들에게 조차 문제를 현실로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 상징적인 권한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안에서 딸 넷인데 다른 딸 다 결혼하고 제가 이제 둘째니까 호주가 된다는 그 느낌이 참 묘하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이런 게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거 같았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완전히 한 두 살짜리 애한테 호주가 넘어가는 느낌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오혜란)

또한 호주제가 갖고 있는 성차별성으로 부가입적제, 즉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과 동시에 남성의 집안으로 강제편입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결혼하여 가족공동체를 만들 때부터 남편은 가(家)의 주인인 반면 아내는 남자가 주인인 가(家)에 종속되는 불평등한 관계로 출발하게 하는 것이다(김경희, 2005).

이러한 호주제의 폐해로 남아선호와 여아낙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대중성을 획득하던 시기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가족 내 아들과 딸 사이의 차별이 만연했던 불평등한 문화가 의료인들에 의해 감지되고 문제화되었던 것이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이른바 ‘아들 낳는 약’을 주문하는 사례들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하였다.

한의원대를 들어가서 한의사 면허를 받고 보니까, 아들 낳는 처방을 많이 주변에서부터 또는 이제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딸 차별을 그렇게 겪으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고은광순)

200명 정도 모이는 큰 학술대회 같은 데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수거했더니 거기에 아이를 스무 번 낙태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여자도 봤다라는 것도 거기 적혀 있고. 여자들이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찾아오는 경우, 남편이 바람피울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의원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또 하나를 낳겠다는 거야, 애를. 왜냐하면 자기 동서가 아들을 낳았는데, 시집이 부자야. 그러니까 재산이 다 동서네로 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아 보겠다는 거예요. 딸이 대학교 다니는데. 아, 이거 굉장한 큰 문제다. 이거는 확실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고은광순)

이어, 고은광순 대표는 남아선호와 여아낙태의 문제가 결국 호주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왜 한국이 뿌리 깊은 남아 선호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이거를 뿌리 뽑을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 강00 변호사를 여성들 만나는 자리에서. 호주제 때문이다. 왜 여자들이 시집에 그렇게 매달려 살아야 되는가. 그 호주제 때문이다. [...] 여아 낙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여아 낙태의 이유가 아들을 통한 대 잇기, 남성중심사회의 그 여성 거부, 혐오, 폄하, 이런 거잖아요.(고은광순)

2) 가족 다양성 무시와 “비정상 가족” 낙인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대중적 공감을 형성하게 된 부분은 바로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실제로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주되게는 자녀의 입적과 부자동성주의의 문제에 따른 사례들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했던 성 불평등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변화하는 결혼형태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혼과정에서 부모 중 한 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었고 극히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 사망하지도 않은 아이를 사망 신고한 뒤 다시 재혼한 남편의 성에 따라 출생신고하는 일이 발생하는가하면,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곤란을 겪는 일이 빈번했다(김경희, 2005). 여성운동단체 대표를 거쳐 국회로 진출한 이후까지

호주제 폐지 운동을 추진했던 이경숙의원은 운동 당시 여성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 호주제의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호주제가 실질적으로 뭐가 여성들이 살아가는데서 문제냐. 뭐 그랬는데 상담을 받아 보니까 제일 놀란 것이, 재혼가정에서 아빠 성과 같이 하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해가지고 애를 아빠의 호적으로 넣는다던가 아니면 실종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변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 그런 일반 여성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가 굉장히 이제 피부에 와 닿고,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이 지역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넓게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이경숙)

이렇듯 주로 재혼 가족 등에서 많은 피해사례가 일어났는데, 이는 가족 구성 이력에 관한 정보가 과잉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보호가 미흡했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

그때는 결혼이나 이혼 등 사유 외에 감옥 간 것도 호적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누구나 이름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도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받기가 어려웠지만, 호적은 그렇지 않았지요.(이석태)

연구자 양현아는 가족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호적에 대하여 일종의 국민통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가족 이력으로 인해 결혼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가족정보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국민 통제랑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적제도가 다 과거를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조상들이 뭐 했나, 너의 부모가 좌익이 아니었나, 간첩 이런 거 다 추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시간 강사로 서울대에 하나 강사를 하려고 해도, 호적 다 내면 다 추적가능해서, 그런 좌익 그런 게 있으면, 시간 강사로도 쓰지 않았을 정도로 이게 그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가 있는데 호적이 쓰였죠.(양현아)

3) 식민지 문화 잔재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이른바 “전통” 수호 입장, 즉 호주제가 오래된 한국 고유의 전통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호주제 폐지 운동 진영은 호주제가 국가에 의한 가(家)제도라는 일본의 제도가 이식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잔재로 다른 나라에 다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게 유일하게 있으면서 아주 전근대적인 법으로 남아있다, 언젠가 개정은 돼야 한다는 인식들은 이렇게 속으로 있었던 부분이지 싶어요.(오혜란)

사실 상 호주제는 그 일본이 도입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전통 몇 백 년 역사다 이라고 이제 사실이 아니다 자꾸 이걸 이론가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일제가 도입했고, 해방 이후에 일제는 호주 그거는 없앴고. 우리만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낙후한 제도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법률학자, 여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지은희)



일본에서 호주제 성립과 식민지 이식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1873년 민법전편찬 사업을 시작하여 1898년 명치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서구 근대법의 수용을 시작했는데, 명치민법이 제정되기 이전 국민의 신분파악을 목적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단위로 하는 호적법이 시행되었다. 국민의 신분 통제를 통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천황에 대한 충성 고취 등이 이 제도에 고려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호적법의 시행을 통해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주제의 관행, 즉 호주에 대한 신분관계 변동 신고의무, 호주권으로서 가족에 대한 신분통제권, 가산의 소유주체, 장남 단독상속 등의 원칙이 형성되었다. 명치민법 제정 당시 가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졌으나 결국 기존의 호적법상 관행을 받아들여 명치민법상의 가제도가 성립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 대동아공영권의 구호 아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관련된 가족국가주의가 식민지로 확대되었고, 강점 후기가 되면서는 식민통치체제의 강화를 위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구호 아래 일제의 가제도가 전면 이식되었다(김상용·이제수, 2005).

이후 남한의 친일파 지도층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일제에 의해 이식된 가족제도의 구분이 미처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

주제 관습이 마치 전통인 것처럼 유지되게 되었다. 또한 앞서 일본(명치국가)에서 형성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활용되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집단에 대해 복종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다(김두수이제수, 2005).

호주제가 일본에 의해 도입된 식민지 잔재라는 이론적 근거를 갖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통” 문화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호주제 폐지 주장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단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점을 양현이는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한다.

현재 판단에서는 역사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삭제해 버렸어요. 전통문제도 아주 소극적으로만 얘기해서 그 판결문 결정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나면,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은 헌법구조에서 보호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거를 만들었어요. 헌법 구조에서 보면, 국가가 전통문화를 창달 발전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 구조에 기해서 성균관이 이게 “합헌이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이것이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호주제도가 전통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현재는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인지 아닌지는 좀 유보해 두고, 전통이라 할지라도, 36조 1항에 반하고 11조 1항에 반함. 즉, 평등권에 반하면 구조에서 말하는 전통문화가 아니라는 논변을 편 거예요. 그 말은 호주제도가 전통일 수도 있다는 거를 함유하고 있어요. 전통인데, 성평등하지 않아서, 불일치된다 이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이다 아니다 문제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게 식민지 때 이식된 우리나라 식민지 유산이다라는 시놉시식자 식민지 자자 한 자만 나왔어도... 너무나 저는 이게 탈식민 법정의 막을 여는 판정이 되는데, 이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양현아)

2.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

1) 호주제 폐지 운동 발단(1953~1996)

1948년 제정된 헌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으며, 제20조에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950년 가족법 기초과정과 신민법 기

초 당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인식이 생겨났고, 1953년 3월 황신덕, 표경조, 장화순, 이태영이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가족법 개정 운동의 역사는 이렇듯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 가정법률상담소)가 설립되고 상담소 주도로 가족법 개정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호주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되어왔다. 이미 1957년에 가족법상 남녀차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인식하에,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 남녀평등, 사실혼의 법적 보호, 동성동본금혼 폐지 등을 국회공청회에서 주장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가족법 개정 과제가 되어왔다. 1973년에는 61개 단체로 구성된 범여성가족법개정축진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가족법 개정 10항목으로 주장된 것은 ①호주제도의 폐지, ②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③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④소유 불분명한 부부재산의 부부 공유, ⑤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⑥협의이혼 제도의 합리화, ⑦부모의 친권공동행사, ⑧적모서자관계의 시정, ⑨상속제도의 합리화, ⑩유류분제도의 신설이었다.

이렇듯 오랜 가족법개정 운동 속에서 호주제 폐지 주장도 이루어져 왔으며, 호주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대중사업 역시 1990년대 말에 갑자기 시도된 것은 아니다. 국회를 상대로 한 개정안 제안과 같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강연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다른 모든 여성단체들이 모아서 시작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1956년 문을 열 때부터 우리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요. 그리고 그 중심에 호주제, 동성동본 등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개정운동 하고, 홍보활동하고, 서명 받고 뭐 전국적으로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매번 가족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낼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0가지, 30가지 냈다면,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서너 가지가 해결이 되면서 계속 고쳐지지 않은 조항들이 누적되어 나간 거고, 이제 호주제, 동성동본은 마지막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곽배희)

1977년 이후 가족법 일부 개정으로 심각한 불평등사항에 대해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남은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며 1984년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결성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41개 여성단체가 함께 한 여성연합회는 1986년 ~ 1989년 가족법 개정 청원, 개정촉구 건의서 국회제출,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했다. 1989년 호주제 폐지 조항 대폭 축소를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이 147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90년 제3차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 III-1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1948~1996)

연도	가족법 개정운동 활동	환경변화(정부·국회)
1948		• 7월 헌법제정
1953	• 3월 법전편찬위원회에 건의서 제출(대표: 황신덕, 표경조, 장화순, 이태영)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한 정의’-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제정 요구	• 9월 법전편찬위원회, 가족법 초안을 완성
1956	• 8월 여성법률상담소 설립	• 10월 가족법안(정부안) 국회에 제출
1957	• 4월 국회공청회 참가: 가족법상 남녀차별 금지, 호주상속상 재산상속상 남녀평등 주장(정관현, 이태영, 표경조 등)	• 12월 제26회 정기국회에서 신민법 제정(호주권의 약화 등 포함)
1958		• 2월 신민법 공포(법률471호)
1960		• 1월1일 신민법 시행
1962		• 12월29일 제1차 가족법 개정
1973	• 6월28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61개 단체 1,200명 여성대표) 가족법 개정 10항목, 선언문 및 강령 채택	
1974	• 9월30일 가족법 개정안(수정안) 국회 제출 • 11월15일 사례·해설·여론집 『다 같은 인간인데』 발간(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1977	• 6월1일 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혼인문제 신고센터 개설 • 9월16일 동성동본불혼제 폐지 기두캠 폐인	• 12월7일 가족법 일부 개정(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개정항목에 불포함) • 12월17일 혼인에 관한 특례법 제정(동성동본 혼인신고 및 자녀입적신고 한시적으로 가능) • 12월31일 제2차 가족법 개정

연도	가족법 개정운동 활동	환경변화(정부·국회)
1979		• 1월1일 개정가족법 시행
1982		• 10월27일 8차 개헌(제34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1983		• 5월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
1984	• 7월18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 41개 여성단체)	
1986	• 9월23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3만 명 찬성서명 첨부 청원서 제출 • 11월18일 김영정 의원 외 60명의 제안서명으로 개정안 국회 제출 • 11월1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YWCA연합회 가족법 개정촉구 건의서 국회 제출 • 12월3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성명서 발표	• 3월 정부, 경제사회발전 6차 5개년계획 기간(1987~1991) 중 가족법상 남녀차별 철폐 방침 발표
1987		• 10월29일 9차 개헌(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10월30일 ‘혼인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1987년12월19일-1998년12월30일까지 동성동본혼인자 신고 접수)
1989	• 12월8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15,816명 서명 첨부한 건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 12월19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회장단,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성명서 발표	• 12월19일 가족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제안), 147회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호주의 권리·의무 조항 대폭 삭제)
1990		• 1월13일 제3차 가족법 개정
1991		• 1월1일 개정가족법 시행
1993	• 11월20일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민법규정 폐지를 위한 청원서 제출(한국가정법률상담소 외 27개 단체)	
1995		• 10월30일 ‘혼인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동성동본 부부 한시적 혼인신고 가능)

(한국여성단 ‘체연합, 2017: 50~5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638~654; 여성부, 2005: 253~260 재구성)

2) 광범위한 연대와 대중성 확대(1997~2002)

1997년 38 여성의 날,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을 기점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은 대중성을 좀 더 확대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호주제 폐지 운동을 1999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여성연합과 1998년에 결성되었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의사회가 공동주최하여 1999년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곧이어 여성연합 내에 호주제폐지 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호주제 불만 및 피해사례 신고전화 운영이나, 호주제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등을 통해 대중의 공감을 확산하는 동시에 대중의 공분을 운동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만 쓰는 것이 가부장제 전형적인 게 이 호주제고. 호주제가 이 가족법 개정에서 아주 가장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성 함께 쓰기, 물론 그 전부터 호주제 폐지는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하자고 해서 97년 3월 9일 때, 부모 성 함께 쓰기 이 선언을 하고...(이경숙)

한국의 여성들이 당하는 불평등에 핵심적인 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든 여성문제라고 하는 게, 계층 문제하고 가부장제가 인제 코인사이드[co-inside]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길 하면서 결국은 그 호주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가부장제의 핵심 사안이다...(지은희)

운동의 주체는 물론 여성운동이지만 그게 이제 시민사회를 감싸고 그것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중화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지은희)

2000년에는 여성운동계와 여성신문사가 함께 호주제 폐지 운동을 추진한다. 지은희 대표는 여성신문 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주장하며 특히 여성 기자들의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당시에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자들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았어요.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각기 자기 그 언론사 내에서도 뭐 정말 싸우면서도 이거를 기사화하고 확산하고 이런 역할을 해줬죠.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지은희)

2000년 7월에는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법률 소송은 운동의 전략 중 하나로 시도되었는데, 광범위한 운동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 가능했다고 민변에서 소송을 주도했던 이석태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호주제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들은 90년대 민법 개정으로 꽤 개선되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남성을 가장으로 한다는 점 등 거의 명목만 남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폐지 호소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운동의 뒷받침을 받아서, 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나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을 비롯한 여성계가 중심이 된 시민사회단체들은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변호사들은 소송에 주력하는 방식이지요. 그에 따라 변호사들이 팀을 꾸려 2000년 무렵부터 소송 제기를 목표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거죠.(이석태)

호주제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이혼여성의 자녀입적, 호주를 남편에서 무호주로 변경하기로 한 사례 등을 모아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시켰고, 2001년 4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이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김경희, 2005).

2000년 9월, 137개 단체가 모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시켰다.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꼽힌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발족과 동시에 국회 청원과 거리서명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위헌소송 제기, 문화행사, 국회의원 설문조사, 국민의식조사와 연구, 토론회, 유명인사 홍보대사 위촉 등 당시로서는 구사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운동을 벌여나갔다.

그 동안 여성운동에서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토론회 그런 거 하고, 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호주를 폐지하기 위해선 여성만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남성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성들도 동참하게 하는 그 조직에서 272명 뭐 기자회견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호주제 폐지 찬성이나 반대나 이거를 다 물어봤죠. 역할분담,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뭐 TV 토론 같은 데 나가고...(이경숙)

표 III-2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1997~2002)

연도	가족법 개정운동 활동	환경변화(정부·국회)
1997	3월9일 3·8 여성의 날,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	
1998	11월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결성	
1999	1월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운동을 1999년 주요사업으로 설정 4월26일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대한여의사회·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공동주최) 5월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발족 7월~12월 전국 50여개 단체 '호주제 불만 및 피해사례 신고전화' 운영 11월 '호주제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발표(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	11월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약' 관련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2000	6월 여성계와 여성신문사, 호주제 폐지운동 공동 추진 시작 7월~8월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 9월2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발족(137개 단체)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청원인 대표: 광배회, 은방회, 지은회) 9월25일~29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집중 서명운동주간 선포 및 거리서명전 11월28일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2001	6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9인에게 호주제 관련 사건에 대한 건의서 제출 7월 딸사랑아들사랑 문화 한마당 개최 8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네티즌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2001 여성' 단체·기관 부문에 선정 10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대상호주제 관련 설문조사 실시 11월 방송인 백지연, 변호사 최병모, 여성	4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위헌법률심판 제청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 채택

연도	가족법 개정운동 활동	환경변화(정부·국회)
	연합 평등가족 홍보대사 위촉 서울대 법학연구소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 식조사’를 통한 호주제 의식변화 분석 및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2002	• 1월14일 제4차 가족법 개정 • 3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 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5월15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2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 7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홍 보영화 ‘우리 평등하게 살래!’ 제작 및 소 책자 발간 • 7월 김병후 정신과 전문의, 이명숙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홍보대사 위촉 • 9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회여성위원회 용역과제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 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보고서 제출 배우 권해효, 개그우먼 김미화 여성연합 평등가족 홍보대사 위촉 • 10월23일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 도 개선방안’ 토론회. (평등사랑변호사모 임,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 • 10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라이너 프랑크 교수 초청 ‘입양가정과 자녀 복리 -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 성’ 강연회 개최	•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사항으로 호주제 폐지 채택

(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50-5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638-654; 여성부, 2005: 253-260 재구성)

3) 참여정부의 등장과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2003~2005)

2003년 2월 참여정부 등장과 함께 호주제 폐지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폐지 입장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2003년,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 을, 법무부는 가족법개정 특별 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 여성부와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라는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공동주최로 민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했다.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운동단체 출신의 여성부장관과 여성 법무부장관이 호주제 폐지에 뜻을 같이 하고 공조했던 것은 호주제 폐지의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지은희 장관은 두 부처가 기존 행정부의 관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로 협력했음을 알려주었다.

엄격하게 말하면 호주제 폐지라고 하는 거는 민법개정안이기 때문에 여성부 권한이 아니에요. 이 민법개정은 저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근데 마침 당시에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워낙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물론 호주제 폐지 찬성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강금실 장관이... 나는 여성부장관이었고, 저도 좀 알고 그랬기 때문에 단언을 내리는 것 중에 내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건요. 보통 남자들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네 사안이거든요. 그거를 여성부 장관이 막 앞서서 막 기자회견 하고 막 조직하고 이러는 거 찬성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금실 법무는 나보러 그걸 하시라 하고 자기는 법안을 짜는 거에 법무부는 하고 내부를 이제 바꿔 놓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업을 한 거잖아요. 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하면서 이 민법개정안을 이끌어 낸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지은희)

시민사회에서는 이 시기 호주제 폐지의 실현을 앞두고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갔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요청을 시작으로, 호주제 폐지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 의원법안으로 발의 추동, 심포지엄, 호주제 찬반 질의서 국회 전달, 국회 앞 1인시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등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2004년에는 299 의원 면담 릴레이와 국회의원 입장 조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호주제 폐지 촉구 편지보내기 운동(호주제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및 호주제 폐지 촉구 공문 발송)을 진행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계속했는데, 2003년 호주제 폐지 촉구 시민사회노동단체 릴레이 성명서 발표, 범국민 캠페인과 길거리 토론회, 호주제 폐지 1만인 선언, 시민 한마당, 2004년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선언이 그것이다.

그 결과, 2005년 1월 대법원이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으로 ‘혼합형 1인1적 가족부’를 제시했고, 법무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를 제시했으며, 법무부가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안신분제에 대해서는 기본 가족별 편제라는 거 하고, 지금 있는 것처럼 개인 편제라고 하는 두 대안이 있었는데요. 그 두 대안이 팽팽했어요. 그니까 기본 가족별 편제라는 게 같이 이제 주거를 하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같이 쓴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호주제도랑 크게 다름이 없는 그런 제도였고, 정치계에서 강력히 밀었고. 처음엔 그게 다수 의견이었어요. 개인별 편제의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한국사회랑 맞지도 않고 이런 게 대부분의 강력한 우리 설이었어요(양현아)

표 III-3 신분등록제 대안 논의 안 비교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개인별 편제방식
의의	기존의 호적체제를 유지하여 부부 및 그 자를 호적의 편제단위로 함. 호적상의 호주를 없애는 대신 부부쌍방 또는 일방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 및 사무처리상의 검색편의를 도모	부계혈통중심의 관념 내지는 家의식을 불식하고, 개인의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 한 사람이 출생하면 1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하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신분변동과정을 전부 기재하는 방식
관련 발의안	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2005.11.04.) 이경숙의원 대표 발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2005.12.28.)	노회찬의원 발의 “목적별 공부에 관한 법률(안)”(2005.2.21.)
장점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부에 함께 공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을 최대한 반영. 편제방식이 현행 호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개편 작업이 비교적 용이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신분변동에 따른 복잡한 이적(제적 및 입적)이기의 이론구성과 절차의 대부분 불필요. 친자동적원칙에 따른 부 또는 모의 호적 택일 문제 불필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검색 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일괄 기재되므로 부부관계, 친자관계의 공시력이 오히려 향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지 축소.
단점	다양한 가족형태 포함 불가능(모자, 부자 가족, 사실혼 가족, 혼인외의 자녀, 재혼가족이나 독신생활, 동성커플). 인자입양혼인 등 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족부 소속의 이적(移籍)과 신분기록의 이기 필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부부의 호적과 자녀의 호적 처리 문제. 혼인외의 출생자의 호적 편제문제. 전혼 중의 자녀와 후혼 중의 자녀를 어느 호적에 편제시킬 것인가의 문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전산 시스템의 내용 변경 필요: 호적부는 문장식으로 기재하여 왔으나, 호적정보화 시행 이후에는 전산호적부에 항목식으로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기록되어 호적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

(여성부, 2003: 69-78; 행안·한상회: 22 재구성)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양성평등 및 개인의 존엄성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위배” (헌재결 2005.2.3. 2001헌가9-5, 2004헌가5)를 이유로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²⁾ 같은 달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3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호주제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고 오랜 폐지 운동이 결실을 맺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된 것이다.

표 III-4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2003~2008)

연도	가족법 개정운동 활동	정부·국회 움직임
2003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채택 의견 표명 5월27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 폐지 272’발족 5월28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조계와 법학계 선언 5월~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 지부, 권역별 호주제 폐지 심포지엄 개최 5월~6월 호주제 폐지 범국민 캠페인 및 길거리토론회 6월 호주제 폐지 대안 심포지엄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개최(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여성부 후원) 7월 호주제 폐지 1만인 선언 9월20일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실현 시민한마당’개최(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주최) 10월 ‘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비혼모	2월 대통령직인수위, 호주제 폐지를 ‘12대국정 과제’로 선정 3월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인권 침해”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5월16일 여성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발족(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참여) 5월27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추동 6월4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발족 9월25일 여성부, 법무부 공동 주최 민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11월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16대 국회 제출

2)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보았다. 관계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관한 개인과 갖고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신옥주, 2014, 356)”



연도	가족법 개정운동 활동	정부·국회 움직임
	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개최(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11월19일 호주제 폐지 이동사무실 개소 및 호주제 찬반질의서 국회전달 11월19일~12월12일 호주제 폐지 국회 앞 1인시위 11월20일~12월17일 호주제 폐지 촉구 시민사회·노동단체 릴레이성명서 발표 1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성단체 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의원 면담. 민법개정안 통과 촉구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체 국회의원 대상으로 '의원 1:1 면담' 릴레이	
2004	7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99의원 면담 릴레이 및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9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 조사: 전체 299명 의원 중 197명(65.9%) 호주제 폐지 찬성 10월~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주제 폐지 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12월3일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선언	6월3일 법무부,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17대 국회 제출 9월9일 민법중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 제출 9월14일 민법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 제출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법 중 개정법률안 공청회(곽배희 소장 토론 '호주제 폐지와 21세기의 가족') 12월 헌법재판소, 호주제위헌법률심판 최종 공개변론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이해관계인 변론 12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005년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 통과 시키기로, 호주제 폐지에 합의
2005		1월10일 대법원,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으로 '혼합형 1인1적 가족부'제시 1월26일 법무부,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제시 1월~2월 법무부,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발족 2월3일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결정 2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 관련 새로운 신분공시안에 대한 공청회 2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대안) 통과 3월2일 국회 본회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법률안 통과, 호주제 폐지 확정

연도	가족법 개정운동 활동	정부·국회 움직임
		• 3월31일 제5차 가족법 개정-호주제도 폐지 포함
2007		• 12월21일 제6차 가족법 개정
2008	• 1월1일 호주제 폐지	

(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50~5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638~654; 여성부, 2005: 253~260 재구성)

3.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의의

1) 호주제 폐지의 여성가족정책사적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제 폐지 운동의 핵심적인 의미를 ‘성평등 추구’, ‘정상성에의 도전과 다양성 수용’, ‘개인의 권리와 존엄 지향’ 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1) 성평등 추구

호주제 폐지 주장의 가장 강력한 이유이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시한 것이 성차별이다. 호주제가 갖고 있는 차별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즉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결혼의 형태에 따른 여성 사이의 차별, 나아가 그 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다(박복순·박선영, 2009; 양현아, 2011).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가 가져온 변화로 꼽히는 성과 역시 제도적 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 돼서 가정의 (성) 평등이 제도적으로 확대된 거죠. 그게 가장 큰 성과죠.(이석태)

예전에는 하이어라키[hierarchy]에 의해서 딱 서열화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고, [...] 이제 호주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아닌거다라고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게 정말 정답이 아니구나,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평등한

관계로, 가족 관계라든지 그 주변 관계라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법률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오혜란)

남아선호사상이 약화되고 재산분배 비율이 평등해진 것은 이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계의 계승을 위해선 아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상당히 약화된 거죠. 그리고 어쩌든 호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던 그 가정 내의 어떤 상징성,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가족으로의 전환을 이룩해 낸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지은희)

가족법 개정사는 줄곧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요소를 가족법에서 없애고자 하는 여성인권운동의 역사(안경희, 2014)라고 볼 수 있으며 호주제 폐지 역시 이를 이어간다. 사실 가족 이슈와 여성 이슈는 매우 밀접하게 교차하며 연관성을 갖는다. 가족 문제라 분류되는 사안들이 사실은 여성의 위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가족 관련 담론에 대한 저항과 정책 개선에 늘 영향을 미쳐왔고, 호주제 폐지 운동은 그러한 하나의 중요 사례이다. 특히 호주제 폐지 운동은 긴 시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면서 운동을 지속하여 성과를 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한 페미니스트 의미 분석에서, 당시 논의되었던 호주제의 식민지 잔재로서의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현아(2011)는 호주제 폐지를 이끈 페미니즘을 “포스트식민적 역사개입”, 즉 한국 가부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식민지 유산 청산에 대한 개입이라 일컫는다.

호주제 폐지를 이끈 페미니즘은 어떤 페미니즘이었는가. 호주제 폐지과정은 여성의 차별적 위치성에서 이루어진 식민지국가 유산의 극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호주제 폐지 운동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외친 이태영 세대의 제1세대 페미니즘,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을 생각한 1980년대 말의 제2세대 페미니즘, 그리고 역사성에 주목하는 2000년대의 제3세대 페미니즘을 등장시켰다. 각 세대에 따라 중심의제가 변천해온 서구 페미니즘과 달리, 한국에서는 호주제도 폐지라는 질기디 질긴 의제 하나에 각 시대마다 페미니즘의 세대와 담론이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것만으로도 호주제 폐지 운동이 한국 페미니즘 성장과 궤를 함께 한 역사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양현아, 2011: 357~358)



(2) 가족 다양성 존중

앞서 논의했듯, 호주제 폐지 운동이 확산된 조건 중 하나로 1990년대 급격하게 부상한 가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혼, 재혼, 국제결혼의 증가와 그로 인해 이루어진 가족은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한 호주제와 더 이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소현숙, 2015). 호주제 폐지 운동 당시에 한부모로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던 M 대표는 당시의 운동 참여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저희가 호주제 그 당시에는 그냥 아이 혼자서 키우는 엄마로써 크게 호주제 문제를 생각했다기보다는 한부모들이 보니까 엄마들이 거의 아이를 키우는데 친권이나 이런 것들 것 그냥 다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성도 개인의 의지 상관없이 다 남자의 핏줄 이더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 어떤 가부장성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들이 너무 많아서 이 호주제는 정말 폐지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같이 많이 함께 했었고 또 특히 이제 그 재혼하는 가정들이 혼자 있다가 재혼을 하면 서로 성이 달라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아빠는 성이 누군데 너는 성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어떤 형태로 살든 이런 문제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불편함은 없어야 되겠다. 뭐 그런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M)

호주제 폐지의 최대 피해자로 여겨진 이들 가족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호주제에 대한 여론은 점점 폐지 쪽으로 기울어 갔다. 2001년 국민의식조사(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이 27%에 그쳤으나, 2002년 조사(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는 45.8%, 2003년도 조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66.2%로 증가했다(황인자·김영미, 2011).

(3) 개인의 권리와 존엄 지향

호주제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제한하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제도이며 폐지 운동 역시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호주제의 헌법 불일치 판결의 근거에는 성평등 뿐만 아니라 개인성 존중의 관점 역시 포함된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호주제 폐지 후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를 개인 별로 표시하게 된 게 (변화라면) 변화죠. 이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훨씬 잘 보호되게 됩니다. 본인이 승낙 안하면, 하다못해 가족 간에도 발급받기 어려워요. 그 전에는 호적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 누구나 다 알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기본증명서의 경우는 본인이 나고 죽고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 사항을 알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부 관계, 아이들 이런 게 나오죠. 또 혼인은 누구랑 결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요. 원만한 가족이라면 뭐 그걸 다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갈등 좀 있고 그런 경우엔 문제가 다르지요. 그게 제가 보기엔 변화라면 변화입니다.(이석태)

성미애(2017)에 따르면, 호주제를 둘러싸고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개인의 희생을 동반하더라도 가족 집단의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가족주의’ 사이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로 법제화된 가족주의는 국가주도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개인의 안녕을 국가의 복지 인프라 대신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권위주의적 정치질서 유지를 도모했다고도 볼 수 있다. 호주제 폐지라는 법제적 변화는 개인의 인권과 충돌할 수 있는 가족주의를 극복하여 한국 가족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가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 나아가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일조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성미애, 2017).

2) 호주제 폐지의 운동사적 의미

(1) 운동 주체의 성장과 사회적 조건

한국사회에서 이토록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넓게 보면 후진적인 사회·경제 구조,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 전근대적인 생활양식과 의식 등이 자리잡고 있다. 김상용과 이제수(2005)는 호주제 폐지 직후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었던 조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1) 한국사회에서의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는 대가족제로부터 부·친자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으로의 구조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전근대적 가족제도의 물적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 2)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민주화와 더불어 급격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퇴조라는 사회 분위기의 확산에 의해 지배와 통솔을 주된 원리로 하여 기능하는 권위주의적 가족관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사상적 뒷받침을 상실하게 되었다.
- 3) 사회전반적인 인권의식·평등의식의 확산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진출 확대는 인권침해적이고 여성차별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광범한 거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 4) 한국사회에서 헌법의 실효적 규범력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그 핵심적 가치가 여타 법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에 의해 가족법에 존속하던 위헌적인 가제도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5) 한국인에게 오랜 세월동안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통제와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의무중심의 법관념(法觀念)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법관념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법관념의 변화는 호주제에 의한 관념적인 가적(家的) 가치의 추구과정(그 구성과 유지라는 측면에서)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매몰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김상용·이제수, 2005: 154-156)

가족구조의 변화, 인권의식·평등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민주화와 더불어 급격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퇴조라는 사회 분위기의 확산(김상용·이제수, 2005: 154)” 이 호주제 폐지의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90년대에 부상한 페미니즘(한국 페미니스트 가족연구의 본격화 시기이기도 함)은 본격적 호주제 폐지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김혜경, 2012). 이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한 주체와 운동 전략 및 구체적 방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가족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오랜 동안 이루어져왔으나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을 통해 성장한 여성운동 세대의 등장을 그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국회의원과 법률가에게 의존하던 방식 대신 여성 대중의 조직화를 통해 국회의원을 힘으로 압박하는 운동방식을 선택했다(소현숙, 2015).

1987년 민주화항쟁을 중심으로 분출된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요구와 이에 따른 변화는 여성운동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진

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 창립되고 이들은 대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 참여하였다.³⁾ 이 활동가참여자들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한 운동의 주체로 나서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의 확산 시기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2) 광범위한 연대와 대중적 공감

위와 같은 여성운동 주체의 성장이 광범위한 연대와 대중의 공감을 얻어 호주제 폐지 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석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중적 자각에 대해 설명한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하는 시대 상황에 대한 대중적 자각이 있었고요. 또 호주제 폐지는 남성 대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라는 데 대한 인식의 공감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명 남녀 연예인들의 자발적 도움도 컸지요.(이석태)

1998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호폐모)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호주제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호폐모의 출현과 활동은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운동의 주체 및 주제의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기성 여성단체나 전문가 주도의 운동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모임에 의해 운동이 확산된 경우라 할 수 있다(양현아, 2011; 소현숙, 2015). 운동 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 호주제의 피해를 공유하고 공분의 확산 효과를 가져왔다.

게시판에서 알게 된 합리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따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전히,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장00씨의 호주제 관련한 책 복사해가지고 공부하면서 방향을 그렇게, 호주제 폐지 결론은 1인1적 뭐 이렇게 잡게 된 거죠.(고은광순)

3) 한국여성성전화 1983년, 한국여성민우회 1987년, 한국여성노동자회 198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년 창립

호폐도 같은 모임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90년대 말이야 돼서야 그렇게, 그야말로 만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온라인에서도 어떤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그것은 특히 이제 이동과 이런 게 좀 부자연스러웠던 여성들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그야말로 테크놀로지, 사회변화에 뒷받침 될 거고, 거기서 역시 싱글녀들,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회규범화의 변화와 관련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이혼녀고 내가 재혼녀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커밍아웃이죠.(양현아)

호주제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이 온라인의 자발적 연대라는 ‘방식’과 결합하여 공감의 확산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호주제도에서 얼마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주고 내 자녀에 재혼자녀라는 이유에서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고, 내 아이의 지금 호적에 아직도 아버지 호적에 있어서 주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이 착착 축척이 됐고, 드디어 이제 공론화돼서 나온 거죠. 90년대 말. 이제 이게 그 말씀하신 데로 뭐 그때 하이텔[HiTEL]인가 뭐 이런 데로 막 공유가 되면서, 한 2001년, 2년쯤 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천리안이니 그런 뭐 일종의 국민투표라고 하나요, 거기 의견 투표란이 다 생겨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시민들의 그 의견, 그 투표에서는 이미 시민들의 뭐 8, 90%가 호주제 찬성으로 폐지 찬성으로 나오니까, 이쪽은 막 힘을 팍팍 받는 상태였어요.(양현아)

2000년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였고, 여기에는 이혼 후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키길 원하는 여성, 본인이 성 선택을 원하는 경우, 재혼 후 성 선택을 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원고가 참여하였다.

그 전에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 한 사람만 호주로 신고했는데, 소송 제기의 필요상 혼인신고 시 부부 두 사람을 호주로 신고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 민법상 안 받아 들여지죠. 그래서 이런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어긋나 위헌이다 라고 하며 재판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방식의 신고를 한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주를 여성으로 신고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이석태)

이와 같은 ‘위헌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직접행동’ 역시 민주화 이후 부활한 제도

에 의해 가능해진 운동전략으로, 동성동본금혼과 호주제 폐지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소현숙, 2015).

한편, 다양한 조직과 개인의 연대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호주제 폐지 운동은 참여주체 간의 갈등이 일부 존재했으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노력해서, 그때처럼 이렇게 한 마음이 된, 삼위일체가 된 적이 없었어요.(곽배희)

호폐연에서 실질적인 주축으로 활동했던 몇 단체들만 보아도, 가족법 개정 관련 활동의 역사 차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 차이, 소속 회원단체의 성향 차이가 드러난다. 각 단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성향의 차이와 더불어, 연대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조율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했다.

단체들끼리도 이제 뭐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협[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나 뭐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또 서로 단체별로도 이제 서로 가지고 있던 어떤 견해뿐만 아니라, 뭐 세라면 세, 뭐 방식이면 방식 요런 거를 조율하는 게 뭐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국 잘 조율이 됐던 이런 이야기도.(이경숙)

당시에 운동의 특성은 일단 보수진보로 나뉘었지만, 여협하고도 굉장히 많은 운동을 했어요. 이 호주제 폐지 운동, 여협도 했고, 가정법률상담소는 물론이고, YWCA, 당시에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이런 여성 전체를 위한 운동에는 보수와 진보가 정말 없이 함께 다니면서 시위도 하고 굉장히 많이 찾아 다녔죠.[...]당시에 이쪽 이른바 보수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상당히 여성 운동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거는 되어 있었어요. 이00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김00 선생이 그 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이게 성평등에 관한 한은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었죠.(지은희)

특히 호주제 폐지의 성공과 관련하여, 의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신분등록제 대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아래 이경숙 의원과 고은광순 대표의 기억에 각자 다른 입장이 드러나 있다. 마지막까지 소수 의견으로 1인1적제 주장을 펼쳤던 고은광순 대표의 입장과 법안 통과 가능성에 좀 더 중점을 둔 이경숙 의원의 입장이다.

그 책에서 그 책을 공부하다 보면, 해답이 1인1적이예요. 그래야 부모가 이혼을 하든, 비혼으로 살든, 신분등록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난데없이 그 때 와서 보니까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여성연합이 둘이, 두 단체가 어... 부부중심의 호주제로 해법을 내놓은 거예요.(고은광순)

지금의 이 운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리고 한 번에 다 모든 걸 해결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약간은 개선돼야 될 점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포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인1적제를 채택하지 않았죠. 그 법원 발의할 때.(이경숙)

이와 같이 호주제 폐지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더 무게를 둔 입장과 다양한 가족 존중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입장 사이의 논쟁이 일어났던 신분등록제 대안 외에도, 성(姓) 계승에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부성 승계에 대해 ‘강제’에서 ‘원칙’으로 그 강도를 완화하고 부모의 합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높은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자 양현아는 당시 본인의 의견이 극소수에 해당했다고 한다.

법무부 안은 자의 성분을 부계성분주의를 하고. 제가 주장했어요, 안 된다, 이미경 안처럼 가야 된다. 호주제 삭제와 함께 이렇게 가도, 현실에서는 모의 성분을 따르는 사람은 매우 소수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이런 길을 열어 줘서, 여성들도 자의 성분을, 지금도 우리 CEDAW라고 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유보 조항이예요. 자의 성분에 관해서는 남녀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진 적이 있어요. 어떤 시간에는. 그런데 저 같은 의견이 매우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여성운동이나 우리 위원회 안에서 저의 의견을 호응해주는 사람이 대단히 적었어요.(양현아)

차이를 조율해가는 과정은 호폐연 내부 논의에서만 아니라, 뒤에서 다룰 시민사회와 정부·국회 사이의 논의에서도 이루어졌다. 호주제 폐지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과 이상적 대안 사이에서 협상을 반복하면서 합의의 수준을 조율해갔던 것이다.

큰 갈등은 없었는데 이게 인제 막 보수, 진보, 막 중도들 다 합치니까 호주제 폐지가 난공불락이잖아. 워낙 반대 세력이 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갖고 뭘 하느냐가 좀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 친양자제도를 먼저 도입하자, 그런 주장과 우리는 그것 되고 나면 이 호주제 폐지 또 한참 뒤로 물러나게 된다. 뭐 그래가지고 호주제 폐지를 우리는 주장을 하고, 그 친양자제도 그거는 뭐 우리는 반대는 안 하지만,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이경숙)

(3) 젠더 거버넌스: 정부-국회-시민사회의 공조

호주제 폐지의 성공에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부, 즉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역할도 중요했다. 입법부의 법개정 노력과 더불어 위헌제청 사건에서 사법부의 결정도 호주제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구관 등 법률가들이 이렇게 호주제 폐지에 관련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 환경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호주제 폐지에 우호적인 정부의 등장, 즉 호주제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던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조성된 환경과 법무부·여성부와 같은 부처의 노력이 그러하다(양현아, 2011; 권수현, 2015; 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황인자·김영미, 2011).

III

강금실장관이 장관이 되면서 장관의 의지가 있으니까 밀이 확 바뀌더라구요. 그렇게 되니까 그 두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 그 자리에 있고, 여성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고, 엔지오[NGO]에서 정말 몇 십 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고, 이게 어느 시점엔가 딱 모아지면서, 통과라는 과정으로 가게 된 걸로 보거든요. (오혜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표이자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공동대표였던 여성운동가가 여성부장관으로, 호주제폐지의 입장을 가진 여성 법조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호주제 폐지에 유리한 인프라 구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호주제 폐지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행했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의제설정 단계 이후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권수현(2015)은 호주제 폐지의 직접적 결정요인 파악을 위해 분석의 수준과 공간을 국회로 옮겨 호주제 폐지 운동을 살펴보았다. 진보적인 정부의 등장에 도 불구하고 가족법 개정이 15대, 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7대 국회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의회구도의 변화, 즉 호주제 폐지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들의 과반 의석 확보에서 찾을 수 있으며, 흔히 전통적 가치에 저항하는 성격을

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들 이슈를 성평등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정치 내 행위자들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구성이 오히려 역전이 되면서 확 바뀌면서, 그 여소야대에서 이 여당의 몫이 그 다음 총선에서 확 증가되어 버리는 그런 이변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때 국회가 2005년 3월에 의결됐으니까, 아마 2002년에 있었던 총선이겠죠. 거기서 민주당이 의석이 확 증가하고, 이제 여성과 젠더평등에 대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 의회에서 일어나자 우리, 우리 특위가 법무부 특위가 막 힘을 받은 거죠.(양현아)

한편, 호주제 폐지는 각각의 주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정책과정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여성부,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법무부)와 여성단체라는 행위자들 간에 인적자원의 흐름과 적극적 연계행위를 통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한 젠더 거버넌스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즉 여성단체로부터 정부와 국회로 인적 자원의 이동(여성운동단체 출신의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부와 여성단체 간 간담회와 공동 협력사업 수시 진행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성공시켰다 (황인자·김영미, 2011).

특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거버넌스에서 마지막 단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에서 행위자 상호간의 이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의 상호 이해와 조율과정을 지은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건 어떻게 풀었냐 하면 거버넌스[governance]예요. 그니까 여연 다 같이 해서 자, 이렇다. 정부의 상황은 이렇다. 근데 지금 성 선택의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국무회의를 통과시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아마, 이미경 안도 그렇게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호주제 폐지와 이런 정도로 해서 통과할지, 아니면 이걸 다 그만두고 담에 완전한 걸 가지고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인데, 내 생각은 이번엔 호주제 폐지를 하고, 이거는 나중에 보완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여연의 기본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 엔지오 포지션은, 나는 내가 엔지오에 있었고 장관이지만 엔지오가 엔지오 포지션을 바꿀 필요는 없다,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해는 좀 하면 이걸 이제 국무회의 통과를 하고 국회 가서 통과되도록 하자. 그러면 반대 하죠. 반대 해야지, 하라. 그러나 그 반대의 정도는 말하자면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반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여연이 죽어도 못하겠다, 더군다나 단체가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서로 이 시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다고 하는데 어째든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그게 고비는 그거예요. 이게 엔지오의 거버넌스가 없었다면 그도 잘 안 됐을 것이고, 이런 지점이 있죠.(지은희)

또한 법률안들이 만들어지고 제출되는 과정에서 수정과 반론,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가족 개념의 삽입 역시 한 예이다. 2003년 11월, 가족 개념이 없었던 법무부 원안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로 제동이 걸린 후 급하게 가족 개념을 넣은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가족의 범위는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형제자매”로, 이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는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정부안의 범위는 혈연이나 결혼을 넘어서 관계를 포괄하지 않아, 그동안 여성계가 주장해온 현실적이고 다양한 가족 개념에 맞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정부안은, 호주제 폐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마치 가족이 해체될 것으로 우려하는 당시의 반대세력과 타협 가능한 선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제한된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김경희, 2005; 김용화, 2008), 결국 호주제 폐지 이후의 한계와 과제로 남았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형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에 중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NGO의 활동에 기인한 결과물이 호주제 폐지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낸 인적 자원이 NGO 출신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엔지오의 역할이... 가족법 개정은 저는 정말 엔지오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봐요. 왜냐면 처음부터 여기서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이 주제에 대해서 놓지 않고 계속 끌고 왔다는 거, 주변에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끌고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정책결정권자로 자리 잡았어도 그걸 할 수가 있었지. 엔지오들의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두 분이 그냥 이거 폐지합시다 그래가지고 될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오혜란)

당시에 YS, DJ 이런 정부쪽에서도 여론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거를 인정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지은희)

NGO와 정부 사이 인적 이동뿐만 아니라, 지은희 장관의 의견에서 드러나듯 당시 정부에서 여성운동계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운동계의 의견과 정책관련 정보를 수렴하려는 태도 역시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버넌스 주체를 정부와 시민 운동으로 보았을 때, 시민운동 내부에서 주류가 아닌 개인·조직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IV

호주제 폐지의 현재적 의미와 정책 개선 방향

1. 호주제 폐지 이후, 한계와 극복지점
2. 가족의 현재와 정책 개선 방향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호주제 폐지의 현재적 의미와 정책 개선 방향

1. 호주제 폐지 이후, 한계와 극복지점

앞 장에서 살펴본 호주제 폐지 운동의 특징에 이어, 호주제 폐지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현재의 가족 이슈와 결합하는 지 논의하고자 한다. 호주제가 사라진 자리에도 부계혈통주의, 가족 내 불평등 문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가족 중심의 신분등록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1) 부계혈통주의의 잔존

부성주의는 가부장적 가치질서를 유지시키고 가족 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성평등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 상황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 사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성에 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목적 없이 모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6조 1항 평등권에 반하고, 오로지 성별을 근거로 자에게 부성을 부여하여 성에 따른 차별을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에 반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와 부모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되는 부모의 자녀성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신옥주, 2014; 김성은, 2015).

호주제가 폐지되고 민법상 부성강제주의가 부성주의 원칙으로 완화되었으나, 이러한 표면적 변화에 비해 실제로는 부성승계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개정민법에 의하

IV

여, 첫째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에 의해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이거나 모의 성 선택 기회가 생겼고, 둘째, 모의 성을 사용해왔더라도 친부의 인지에 의해 모와 자의 동의 없이 부의 성으로 변경되었던 과거와 달리 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현재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성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부성원칙주의가 고수된 채로 모의 성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되어 모의 성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김성은, 2015).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신고 시 부부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보편적이다.

부부가 합의를 했을 때 결국은 엄마의 성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전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쪼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문화가 아직. 그래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이 성씨를 자유스럽게 쓰는 문제가 좀 더 확산돼야 될 것 같아요.(고은광순)

뭐 가족관계등록부도 기준 등록지가 있기 때문에 다 기준 등록지는 거의 남편을 따를 테고, 성도 뭐 선택하게는 돼있지만 결혼 때 그거 가지고 내 성으로 해, 그러면서 애 낳지는 않잖아.(이경숙)

2) 가족 내 불평등 문화의 지속

호주제라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실생활에서 가부장적 인식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법제도와 문화 사이의 간극은 지속적으로 메꾸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문화지체로서 가부장성은 족보, 제사, 명절문화를 비롯한 가족생활 전반에서 지속되고 있다.

호주제폐지는 그냥 뿌리만 뽑혔을 뿐이에요. 호주제가 존치하면서 키웠던 잎, 줄기, 가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곽배희)

법이 개정됐지만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가족 내에서의 어떤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고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어떤 관습이라든지 관행 속에 남아있는 그런 의식구조까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오혜란)

가족은 여전히 며느리가 들어가면 제일 바닥에 깔려야 되고 도련님, 아가씨 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 지금 그런 게 사실은 이른 바 시댁이나 뭐 아들을 가진 며느리를 둔 이제 부모님도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며느리 살이 라는 말이 나오고 있듯이, 사실 그 쪽 세대도 좋은 것은 아니예요. 누구에게도 좋은 게 아니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가족문화가 가부장적인 것이 법이 바뀐다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어서...(양현아)

제도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평등한 가족문화는 모든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사항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더라도 가사노동의 부담 등 평등하지 못한 부부·가족관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들이다.

나이가 30대 후반 대인데, 같은 또래 피디 7명 중 자기 부인만 결혼했고 나머진 다 미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미래상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혼인 신고 후 갖게 될 부부 관계, 시댁, 친정 등의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의 영향으로부터 아내가 가진 피디

라는 직업이 성격 상 충분히 이해되고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거의 양립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 남성 피디가 아내인 여성의 내조 등으로 나름대로 경력을 키우듯이, 여성 피디 또한 크게 몸 상하지 않으며 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를 못하니깐 아예 결혼 안하는 거예요.(이석태)

■ 표Ⅳ-1 ■ 맞벌이가구 가사노동시간(2004~2014)

(단위: 분)

		맞벌이 남자	맞벌이 여자
2004	가사노동	32	208
	가정관리	30	167
	가족보살피기	12	41
2009	가사노동	37	200
	가정관리	24	158
	가족보살피기	13	42
2014	가사노동	40	194
	가정관리	26	155
	가족보살피기	14	3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2014.)

주: 맞벌이가구: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부 중 둘 다 취업한 가구.

가사노동: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핌에 사용한 시간.

가족 내 불평등 문제는 사회전반의 성 불평등과 무관할 수 없다. 특히 구술 참여자들은 가족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과 노동 등의 여타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연결하여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성 불평등에 대해 진단하였으며, 면접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고조에 이른 미투(#Metoo)운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 면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성폭력이 만연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다.

가족이 노동, 가족이 교육, 또 가족이 어떤 이런 경제 제도하고 어떻게 지금 서로 저는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미스매치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오래 됐다고 봐요. 여자들을 가사 노동자로 키우려고 대학교육 시켰나요, 박사로 키웠나요. 근데,

노동시장은 그것을 그런 여성노동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건 분명한거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 여성의 하급직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섹슈얼리티는 더 안 바뀌고 있는 거 같고.(양현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성들로 하여금 이중 잣대를 갖다 댔는지. 남자가 여자관계를 가지면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가지면 저럴 수가. 저건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지금도 있어요. 근저에는 그게 있다고요. 왜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여성들이 술을 따릅니까. 왜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꼭 여성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직도 그런 관습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곽배희)

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잔존

가족의 변화에 주목한 결과가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 냈음에도, “정상가족”에 대한 관습과 이를 벗어난 유형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족 관련 당사자 운동 단체 M대표와 C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이혼·재혼가족이나 비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현재 가족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본다.

이혼한 부모를 가진 아이들을 사회에서 보는 시선, 그리고 특히 미혼모 마찬가지로. 이런 시선이나 인식은 아직 그런 불평등한 시선들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죠.(M)

결혼 안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그 여성에 대한 낙인이 일단 없어져야 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C)

그래서 어디서나 혼자 아이를 키우든 둘이 키우든 혼자 살든 그걸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 활동의 목적이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래. 한부모라는 말이나 한부모, 미혼모라는 말도 없어지고 그냥 혼자 애 키워, 나 그냥 남자친구 아이 낳았는데 그냥 혼자 키우기로 했어. 이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M)

실제로 비혼모들이 임신으로부터 출산과 자녀양육의 결정과정, 그리고 취업과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까지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하며,⁴⁾ 이는 “순정의 가족형태를 이상시

4) 여러 조사를 통해 비혼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비혼모 아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걱정, 취직 등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2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하는 가족주의"에 기반해 있다. 혼외출생율이 50%를 넘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에 비해 1.5%에 불과한 현저한 혼외출생율을 보이는 등, 가족을 통한 정당성 승인의 준칙이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결혼 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이와 관련이 있다(김혜영, 2013: 11~12). 위에서 다루었던 부계혈통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모계혈통에 기반한 가족구성의 가능성은 닫혀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아버지의 승인이 배제된 자녀는 정당한 사회성원으로 수용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사회에서 비혼모들은 심각한 차별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김혜영, 2013).

한편, M 대표는 실재하는 가족을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다.

건강가정 지원법이 생기면서 건강가정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건강가정이 뭐냐, 한부모가정은 건강가정에 속하냐. 이런 생각이구요. 건강가정지원법을 보면 이 법의 목적은 가족 해체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가족 해체는 예방해야 될 그런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M)

현재 가족 이슈에 대한 진단을 요청했을 때, 거의 모든 구술 참여자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가족구성의 변화 인식을 언급했다. 정서적 유대나 돌봄과 같은 가족으로서의 필수 요소보다 혈연관계를 더 가족의 기준으로 보는 인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사실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논의를 하려면 지금의 그 결혼 중심의 출산 정책이라든지, 결혼과 이혼을 하지 않는 그런 정상가족규범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정부부터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혼 가구에 대한 더 적극적인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거 해줘야 되고, 결혼하지 않은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한 자녀가 출산했을 때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적극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양현아)

가족 간에서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이루어졌나 이게 중요한. 이런 정서적인 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혈족관계, 이런 거로만 보는 프레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재혼가정, 복합

인권상황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비혼모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사항에 삽입하였다(신옥주, 2016).

가정, 그니깐 복합가정은 엄마도 다른 애, 아빠도 다른 애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복합가정.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이경숙)

이성 간 가족의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혼인한 부부가 아닌 파트너 관계도 있지요. 이걸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영구적인 반려자라는 관념 또한 영향을 받겠지요. 파트너가 계속 바뀌는 거지요.(이석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여가서의 가족 개념이 혈연과 결혼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다양한 가족’이 포함하는 범위가 맞벌이, 주말부부, 기러기가족, 무자녀가족, 비혼모가족, 조손가족, 이혼가족, 국제결혼가족 등인데, 이들은 혼인과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행안·한상희, 2007). 구술 참여자들 역시 동성 파트너십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가족의 다양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혼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서로를 파트너라고 부르든지 해서 혼인신고를 하나 안하나 같이 사는 한 보호를 받게 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호주제 폐지의 성격상 거기까지 못 갔는데,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동성결혼까지.(이석태)

지금도 다양한 가족행태가 있어요. 한부모 가족도 있지만 동거가족도 있고, 집단생활도 있고, 동료 가정도 있고, 또 하나 내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선뜻 말할 순 없지만, 동성애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니까. (곽배희)

가족도 다양해 질 수밖에 지금 없고. 왜냐면 부부가 따로 사는 거, 이혼, 재혼, 얼마나 다양해져요. 그리고 동성커플까지. 그 다음에 사실 나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는, 우리가 이른바 코헤이비팅 패밀리[cohabiting family]라고...(지은희)

4) 신분등록제의 한계

호주제 폐지 운동 당시 첨예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신분등록제의 대안이었다. 이는 운동 주체 간 논쟁 및 정부-NGO 간 이견을 조율하며 얻어낸 연대의 성과인 동시에 내용적 한계로 남은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나서 이제 호적법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럼 대안을 갖고, 1인1적제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을 할거냐. 저도 1인1적제가 맞죠. 맞는데 워낙 뭐 가족이 무너진 것 같고 무엇이 어찌고저찌고 뭐 난리를 치고 [...] 어쨌든 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1인1적제도는 우리가 당론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지금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법 형태를 뺄 수밖에 없고, 대신 목적별로 하자, 대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죠. 지금의 이 운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리고 한 번에 다 모든 걸 해결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약간은 개선돼야 될 점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포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인1적제를 채택하지 않았죠. 그 법원 발의할 때.(이경숙)

결국 가족관계등록법 역시 개인보다는 가족관계 중심의 신분등록제로서 호적제로서 한계를 가진 채 이어져 오고 있다.

개인별 편제라는 것도 실제 실무에서는 호적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게 돼서 최근까지도 계속 해서 하면서 이혼했든지, 혼외자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 사항에 계속 남게 되니까 이게 공으로 보면 물론 그게 기록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이렇게 너무나 기본 사항으로 자주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양현아)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한계 역시 지적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행정(일선 공무원)과 각종 기관의 증빙서류 관련 담당자들에게서 호주제가 가진 문제점의 해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데 지금도 좀 문제는 있어요. 선생님 말했듯이 [증명서] 뗄 때 특히 동사무소 가면, 인터넷에서 뗄 때는 내가 체크, 체크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가면 그냥 일반으로 떼 주면 다 기록 되어서 나오고.(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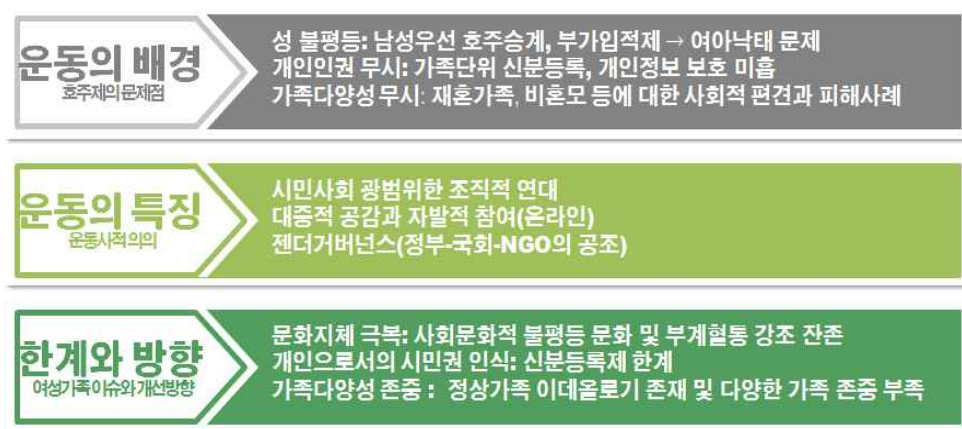
본인이 원할 때 떼는 건데 사실 상세가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할 이유가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반증명, 그거를 가족관계등록법 안에서 바꾼 건데 바꾸어서 변호사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꿨는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상세가 있는지 일반이 있는지 뭐 잘 모르구요. 그리고 그냥 떼주고 사실 상세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일반을 떼어 오셨죠? 상세를 떼어 오세요.”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걸 들여다 봐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떼어 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C)

가족관계등록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각종 증명서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민감한 신분 변동 내용은 상세증명서에만 기록하게 하고 그 발급을 위해서는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 하도록 했다. 이는 비혼모의 자녀에 대한 기록이 공적 장부에 드러나는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신옥주, 2016). 그러나 C대표의 발언처럼 현실에서는 취지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가족의 현재와 정책 개선 방향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호주제의 문제점이자 폐지 운동의 핵심 주제인 성 불평등, 개인 시민권 무시, 가족다양성 존중 부족은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지체 극복’, ‘개인으로서 시민권 인식’, ‘가족다양성 포용’이 정책방향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제도적 환경과 사회문화를 동시에 바꾸어 나가야 한다.

Ⅱ 그림Ⅳ-1 Ⅱ 호주제 폐지 운동의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



1) 부성주의 해체 · 성(姓) 결정 선택권 확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법 제781조에서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성 결정의 임의성을 부여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예를 들면 재혼가정에서 계부와 자녀의 성이 달라 불편을 겪는 경우, 부의 악행이 있는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부성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조치로 인해 부계혈통의 관념은 약화되었으나 가족의 상징적 동일성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특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김성은, 2015; 변수정 외, 2017; 위라겸·배은경, 2017). 이러한 제도에서는 혈통과 양육에서 어머니의 위치가 인정되지 않고 모계가 비가시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위라겸·배은경, 2017). 또한, 친부의 성을 따르는 혈연적 고착은 약화되었으나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것 역시 부성주의에 따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은, 2015; 위선주·배은경, 2013; 이새라, 2016).

부계성본주의의 실질적 권리 침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자녀의 성 선택을 위한 방안 제언을 통해 호주제의 잔재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을 철회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근거로 제시된 바 있는 협약으로서, 1979년 12월 제34회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이다. 한국 정부는 1983년 5월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는데, 현재까지 제16조 1(g)항은 유보 중이다.

CEDAW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g)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양현아, 2018: 13~14)

이에 CEDAW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게 2007년, 2011년에 이어 2018년 2월에 아래와 권고했다.

D. 주요 사항 및 권고

8. 위원회는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의 철회에 관하여 당사국 관련 부처 간에 진행 중인 협상이 2018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보고에 주목한다.
10.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KOR/CO/8) 및 1988년 제19차 회기에서 채택된 유보에 관한 성명을 상기하며,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는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허용되지 않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양현아, 2018: 15)

유보 중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조항을 지키고 부계성본주의를 없애 가족 친족 내 여성의 낮은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부의 성, 모의 성, 또는 부모의 복성을 자녀에게 줄 수 있도록 하여 부계성본주의로부터 벗어나고 부모 간 협의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정미화, 2018; 신옥주, 2018). 또한 자녀의 성에 관한 부모의 협의시기를 현재의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 시에는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어려워 모의 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므로 적어도 출생신고 시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김성은, 2015).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민법 2제781조의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개정안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 혹은 부모의 복성을 따른다. 단, 부모가 출생신고 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의 성을 결정할 부 또는 모에게 그 지정을 통지한다.⁵⁾

5) 부부가 협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세밀하게 법에 정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법원은 부모 모두의 성을 지정하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성년 자녀가 모계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모계 성의 승계 여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2) 다양한 가족의 이해와 지원

(1) 가족변화 대응 : “취약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인식 전환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가족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유형의 변화에 따라 가족변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 호주제 폐지 운동이 주목했던 가족이 주로 재혼가족과 이혼 한부모가족이었다면, 현재는 가족 구성의 성격이 더욱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더 많은 분석과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근래 한국사회의 가족변화는 가족의 소규모화로 정리될 수 있다. 1970년 5.2명, 1980년 4.5명이던 가구원 수는 2015년에는 2.5명으로 축소되어왔다.

■ 표Ⅳ-2 ■ 가구원 수 추이(1970~2017)

(단위: 1,000가구, %, 명)

구분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평균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1970	5,576	—	9.7	13.3	15.5	17.7	43.8	5.2
1975	6,648	4.2	8.3	12.3	16.1	18.3	40.7	5
1980	7,969	4.8	10.5	14.5	20.3	2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2005	15,887	20	22.2	20.9	27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2015	19,111	27.2	26.1	21.5	18.8	4.9	1.5	2.5
2016	19,368	27.9	26.2	21.4	18.3	4.8	1.4	2.5
2017	19,674	28.6	26.7	21.2	17.7	4.5	1.3	2.5

주: 가구는 일반가구 기준임. 평균 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1970-2017)

6) 90년대 이후 한국 가족변화의 주요특징을 장혜경 외(2014)는 네 가지로 꼽았는데, 첫째, 개인화와 생애 주기의 탈 표준화, 둘째 가족의 다양성과 비정형성 가구의 증가, 셋째,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 약화, 넷째, 가족돌봄 및 재생산 기능의 약화이다. 이들이 꼽은 네 가지 특징 중 가족의 다양성과 비정형성 가구의 증가는 사실상 나머지 세 특징이 원인 또는 결과로 작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가족 구성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를 보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비중은 점점 늘고,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도 늘고 있지만,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점점 줄고 있다. 또한 부부가 자녀와 부/모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최소한의 자녀양육 의무는 여전하지만 부모양육에 대한 의무는 줄어들고 있음이 드러난다.

표Ⅳ-3 가족의 형태별 분포(1990~2015)

연도	혈연가구수* (천가구)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990	10,167	9.3	58.0	8.7	0.9	9.3	13.8
1995	11,133	12.6	58.6	8.6	1.1	8.0	11.2
2000	11,928	14.8	57.8	9.4	1.2	6.8	10.1
2005	12,490	18.0	53.7	11.0	1.2	5.7	10.4
2010	12,995	20.6	49.4	12.3	1.2	5.0	11.6
2015	13,693	21.8	44.9	15.0	1.1	4.2	13.0

*주: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 및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시군구(2015), 홍승아 외, 2016, p.1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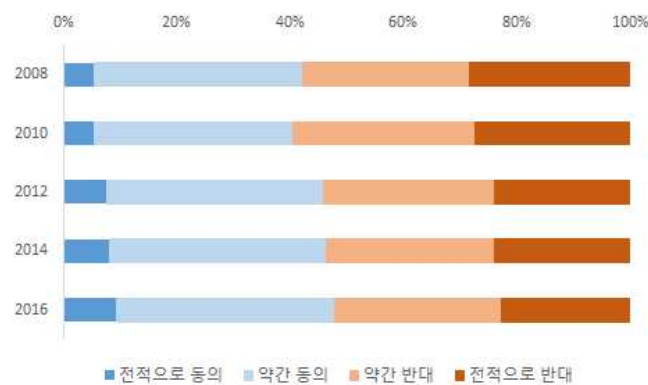
특히 1인가구 비중의 급속한 상승은 가족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990년 100만 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10여년 간 두 배 증가하여 2000년 220만 명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10년 410만 명, 2015년에는 1990년 대비 5.1배 증가한 520만 명에 이르렀다.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는 1990년 25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 50만 명, 그리고 2015년 112만 명에 도달하여 ‘1인가구 100만 시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의 증가속도보다 1인가구의 증가속도가 크게 앞서면서 1990년 서울시 일반가구 중 9.15에 그쳤던 1인가구의 비중이 2015년 29.5%를 차지하며 10가구 중 3가구가 1인가구가 되었다(장진희 외, 2017).

가족변화는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률이 1998년 33.6%에서 2014년 14.9%로 크게 낮아져, 결혼이 더 이상 생애필수과업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사회조사, 홍승아 외,

2016 재인용). 실제로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결혼이나 가족 제도에 편입하는 대신 혼자 사는 삶을 택하는 인구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제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홍승아 외, 2016).

■ 그림Ⅳ-2 ■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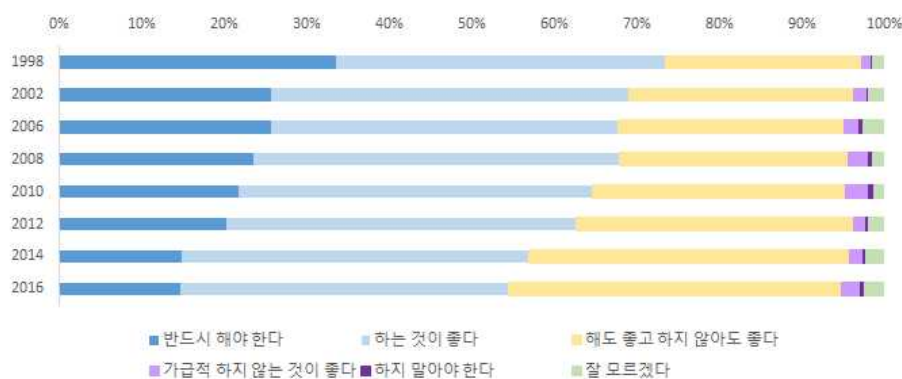
(단위: %)



주: 13세 이상 인구 대상
(통계청, 사회조사, 2008, 2010, 2012, 2014, 2016)

■ 그림Ⅳ-3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6)

(단위: %)



(통계청, 사회조사,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호주제 폐지라는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가족법은 여전히 가족의 현실, 즉 더 다양하고 유연해진 현재의 가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특정한 가족을 암묵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변수정 외, 2017). 따라서 관습적인 가족모델에 기반한 고정적인 가족개념의 틀을 넘어서 가족정책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 1인가구, 동거가족, 공동체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족에게는 가구형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편견의 해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정책은 다양한 가족을 단지 ‘취약가족’ 또는 ‘위기가족’으로 치환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 ‘다양한’ 가족구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계획 3차에 걸쳐 모두 정책과제의 한 영역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이 정책과제의 세부 사항은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취약위기 가족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몇 가지 대표유형의 가족유형만을 지원하여 범위가 제한적이며, 해당 가족유형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국한되어있다.⁷⁾ 따라서 이는 진정한 다양성 고려라기보다는

7)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6대 정책과제 중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1.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3-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3-3.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5대 정책과제 중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2018.8. 보완) 5대 정책과제 중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족형태에 기인한 경제적 위기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나, 취약성을 넘어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규모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에서 실제 가족변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통계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생활동반자관계 제도 마련

나아가, 기존 가족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비혼동거가족, 법률혼 경험에 있는 동거커플, 비성애적 관계의 생활동반자 등의 규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자면,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스웨덴의 동거인법(Sambolag),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법에 이어,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동반자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요구는 1980년~1990년대 동반자 관련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먼저,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은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의 결합제도로, 다양한 형태의 커플에게 행해지는 법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화되었다. 시민연대계약 커플에게는 결혼한 커플과 같이 공동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납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파트너와 동시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유언에 의해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파트너가 사망했을 경우 임차권을 승계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존 결혼 및 이혼 제도에 비해 시민연대계약의 신고 방식을 간단하며, 해당 계약을 하지 않은 단순한 동거 커플보다 거주권, 세제, 사회보장, 재산권에서 더 많은 보장과 결속이 이루어진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홍승아 외, 2016).

스웨덴 동거인법은 동거문화의 증가에 따라 동거 커플의 사실혼 동거관계 해소 이후 취약한 처지에 놓이는 동거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3년부터는 동성 파트너십의 법적 지위도 포함되었다. 재산권 분배의 권리, 결혼과 동등한 수준의 자녀교육권과 세율을 보장하며, 기본 연금 및 상해 연금에 있어서 동거인이 사망한 여성의 경우 사망한 동거인의 자녀가 있을 때 또는 사망 당시 동거 중이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Agell, A, 1981; 김연진, 2018; 이미영, 2015).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법은 위의 두 국가와 달리 동성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다. 동반자는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를 갖게 되며 재산법적 관계의 규율 또는 공동재산제 합의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의 상속권을 갖게 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관계의 승계권도 인정된다(김민중, 2001).

표Ⅳ-4 비혼 동거가족 관련 해외 제도

	프랑스 PACS	스웨덴 동거인법	독일 생활동반자관계법
시작 연도	1999년	1988년 (2003년 동성 동거 포함)	2001년
목적	· 동거 관계의 법적 효력 인정 · 절차의 간소화 · 커플 간 계약서 명시를 통한 갈등 감소	동거 관계 해소 이후 취약한 개인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 보장
보장 내용	· 소득세: 동거 커플의 공동납세 혜택 수혜 가능 · 사회보장 급여: 건강보험, 실업 수당 등의 혜택 수혜 가능 · 시민권: PACS 등록 1년 이후 매년 갱신을 요하는 임시 거주권 발급, 이후 5년 경과 시 10년간 유효한 영주권 지원 기회 부여 · 상속권: PACS 등록 후 형성된 재산 중 본인 몫의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해 일정 정도 재산 상속 가능 · 거주권: 커플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파트너 사망 시	· 재산권: 동거인과 별거나 사별한 경우, 같이 산 동안 소유했던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 인정 · 시민권: 결혼과 동등한 수준의 시민적 지위 부여 · 자녀교육권: 자녀교육에 대해 결혼한 가족과 동일하게 적용 · 복지 및 세제: 결혼한 가족과 동일하게 적용 · 연금권: 기본 연금 및 상해 연금 관련, 동거인이 사망한 여성의 경우 사망한 동거인의 자녀가 있을 경우 또는 사망 당시 동거 중이었을 경우 연	· 성(姓)의 결정: 생활동반자관계의 성 사용, 또는 자신의 본래 성 유지, 또는 '부가성' 추가 가능 · 부양의무: 상대방 부양 의무 · 재산권: 생활동반관계의 성립 전 재산제 표시, '청산공동제'로 재산상태 합의 또는 생활동반자관계에서의 재산법적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계약(공증 필요)을 통해 규율 가능 · 상속권: 배우자의 상속분 결정 시 혼인배우자 경우와 동일한 원칙(법적 상속권과 법적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

프랑스 PACS	스웨덴 동거인법	독일 생활동반자관계법
남겨진 파트너가 바로 입차권 승계 · 공동양육권: 아이를 낳은 모든 비혼부가 부의 친권 성립 후 1년 이내에 자동 공동양육권 획득 가능 · 성(姓)의 결정: 부의 친권 확립 후 부모의 상의 하에 아이가 누구의 성을 따를 것 인지 결정 가능	금 수급 가능. 종신 보험 포함 개인의 연금 결혼 부부와 동등하게 취급	분청구권) · 친족관계: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인척 관계 성립 · 주택임차권: 생활동반자 사망 시 사망한 동반자와 공동으로 사용한 주택의 임차자인 경우 생활동반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승계권 인정

(Agell, A. 1981; Godard, J. 2007; 김민중, 2001.; 김연진, 2018; 백승호, 2014; 이미영, 2015; 최금숙 2008.; 홍윤선, 2014; 홍승아 외,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동거 및 동성 커플에 관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 3월부터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따라 동성 커플에게 결혼과 거의 동일한 관계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동경 세타가야구에서도 동성커플 선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는 수령증을 교부함으로써 동성 커플 인증을 시작했다. 부동산업자나 병원 등이 이 증명서를 소지한 이들을 부부와 동등하게 대하도록 규정했으며,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주택에도 동성 커플 입주 가능토록 했다. 이는 동성 커플이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 임대나 입원 환자 면회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아직 법적 효력은 없으며 소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유덕기, 2015).

대만에서는 2004년 제정된 성평등 교육법과 인권교육의 영향으로 2014년 여론조사 결과 젊은 층의 동성혼 지지율이 80%를 넘겼다. 2016년에는 가오슝시가 동성파트너 등록제를 실시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부 시 정책에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어 같은 해 타이페이시가 동성 커플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 상호 의료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5월, 대만 헌법재판소가 동성 커플의 결혼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만 의회는 2년 내 현행 민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백승호, 2017; 허완, 2017).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이른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2개 진보정당에서 공동공약으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를 내세움

으로써 동반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논의를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서울시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조사, 기본계획 수립,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공동체들이 수술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 보험과 조세 혜택, 경조사 휴가 사용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개인으로서의 시민권 인식과 가족구성의 선택 존중

가족 형태의 다양화소규모화는 그간 “전통적” 가족의 기능형태와 출산양육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를 전제로 했던 정책 방향의 변화를 요구한다. 주로 타 구성원의 부양 책임자 또는 부양 대상자라는 위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가족과 가족 사이’의 불평등,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비해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과 같은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가족 형태 이외의 삶을 선택한 ‘개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며, 개별 시민이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는 데서 오는 문제이다.

가족은 이제 정형화된 견고한 하나의 집단이라기보다는 개인에 의해 이합집산하는 유연한 관계이다. 1인가구의 가구 구성 경로에서 알 수 있듯,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경제활동, 혼인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동거와 분리를 반복하며 다양한 구성을 통해 유연하게 변화한다. 가구 구성의 변화는 있으나 대다수의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 요구를 포함한 정서적 친밀성 욕구를 가지고 있다(장진희 외, 2017). 따라서 미래 가족은 이러한 친밀성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 등의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전형적 가족형태를 넘어서는 다양한 공동체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을 비제도적 가족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배제하게 되는 원인은 우선 가족의 개념이 여전히 혈연과 혼인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만 규정된다는 데 있다. 혈연관계 또는 성애적 관계가 없는 생활공동체까지는 법률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현재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나 정책의 가족 관련 근거기준이 되는 법으로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다. 민법은 가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의 기초로서 가족과 관련한 국가, 사회, 개인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는 법이다. 먼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이다. 여기서 가족은 여전히 혈연과 혼인에 의해 결정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제3조1항),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이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제3조2항)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안적 관계들은 포함되지 않은 채 혼인과 혈연에 바탕을 둔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부터 지금까지 줄곧 ‘건강가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첫째, 부양, 양육, 보호,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개념화된 가족은 사실상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제도와 출산을 전제로 했다는 점, 더욱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제8조1항)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따른 혼인과 출산을 국민의 책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변수정 외, 2017). 둘째, 위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생활공동체를 건강가정으로 규정할 경우 이러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또는 부모관계 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은 마치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셋째, 개인과 가족이 처하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국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개별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의 가치와 기능의 복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송혜림 외, 2017; 김혜영, 2012; 변수정 외, 2017). 이처럼 이념형적이고 가치함유적인 성격으로 인해 늘 논란이 되어온 ‘건강가정’ 용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정의될 때, 예를 들면 부부가 지원대상인 정책사업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반자는 인정을 받지 못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주거임대(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및 주거자금 지원(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모두 법적 혼인을 한 부부가 이룬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변 수정 외, 2017).

따라서 지금까지 가족 개념의 재검토를 통해 법적 정비와 각종 가족 관련 제도와 지원에서 빠뜨리는 개인/가족유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⁸⁾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건강보험제도, 모자모건사업, 일·가족양립 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생계, 소득, 건강, 돌봄과 관련한 영역의 제도들이 혈연 중심의 협소한 가족 정의에 기반하거나 실질적 동반관계를 두루 포함하지 못하는지 점검하고 개편해야 한다.

4)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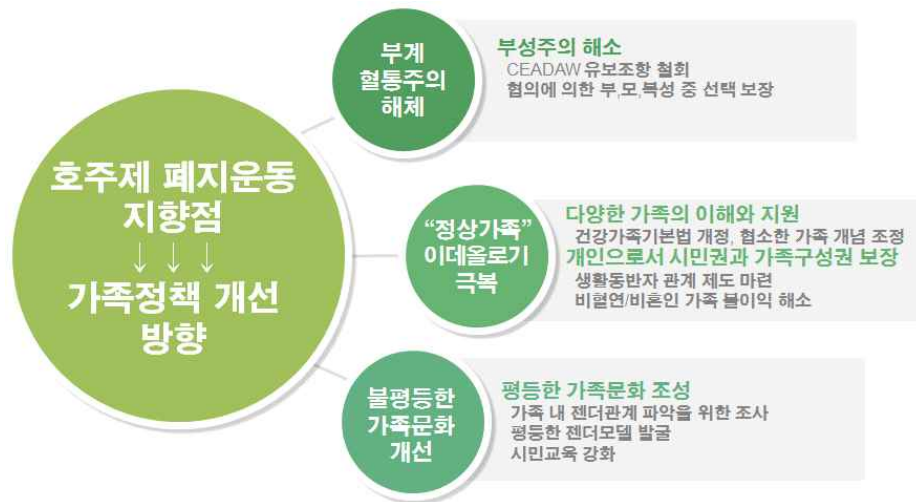
가족 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가족 간 평등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 내부의 평등을 위한 노력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호주제가 사라진 자리에 아직도 남아 있는 가족 내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평등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매년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평등한 명절문화 조성과 평등 용어 사용에 관한 캠페인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 내 젠더관계를 섬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평등지표 개발을 실시하고, 가족변화 대응의 하나로 평등한 가족 젠더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일·가정양립, 안전과 같이 가족 내 성평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영역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의식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족 내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 비전형적인 가족유형을 선택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8) 장혜경 외(2017)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가족범위(민법 제779조) 외에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비혼인동거가족(83.2%), 동성애가족(58.3%), 비동거가족(33.3%)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혼인법 정비의 추진과제에 대하여 응답자의 89.7%가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혼인의 개념에 사실혼(88.9%), 동성혼(73.1%), 동거(50.0%)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림Ⅳ-4 ■ 가족정책 개선 방향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본 연구는 호주제 폐지 운동 여성가족정책사적 의의를 정리하고, 호주제 폐지 운동의 핵심 주제였으나 지향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아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타 정책연구와는 달리 도서관 소장자료의 활용이라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어, 세부 정책과제 제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아쉬움을 남긴다. 향후에 여성가족정책사의 주요 현장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안으로 본 연구의 한계 극복을 꾀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 활용과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여성가족정책사 사료 및 주요 자료의 집적 작업이 효과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를 정리하면서, 자료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등 연대체의 발족선언문, 사이버 시위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가 성평등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지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사 현장 사례를 조명할 때에도 필수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군데에 자료가

집중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므로, 주요 자료의 소재 파악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리한 활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각 소재지의 전자 아카이빙을 통해 원활한 자료 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록으로 타 기관 소재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자료 목록을 첨부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도한 것과 같이 여성운동사의 기록을 위해 구술사 수집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정 주제의 자료 보완 차원을 넘어,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가진 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술사 아카이빙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특히, 생존하는 여성운동가들의 목소리를 기록하여 세대를 이어 오랜 동안 현장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인해 핵심 활동가들조차 구술참여자로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향후 가능한 많은 활동가들의 구술을 수집해야 하며, 잘 알려진 주요 인사 외에도 운동의 현장에서 노력한 수많은 이들의 증언을 살려내었으면 한다.

셋째, 호주제 폐지 운동의 핵심 주제와 관련한 몇 가지 가족정책의 기본적인 개선방향만을 다루었으나, 앞으로 각 영역별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변화에 대한 세밀한 실태파악,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분야의 정책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장단기 정책과제 세부사업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부계혈통주의 철폐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 가족 다양성에 관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담아내지 못한 가족/가구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 비혼모 생활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1인가구 증가를 위시한 비동거 가족의 관계(1인가구의 부모돌봄 등) 및 가족-지역 공동체 연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평적 공동체로서의 가족문화를 위해서는 부부재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대책 마련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Agell, A. 1981, The Swedish Legislation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9, 2, pp. 295-314.
- Godard, J. 2007, PACS Seven Years on: Is It Moving towards Marri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21, pp. 310-321.
- 권수현, 2015, “여성정책 법안에 대한 제17·18대 국회의원 투표형태 분석”. *한국여성학*, 31(4), 331-366.
- 김경희, 2004, “호주제 폐지의 논쟁과 전망”, *여성과 사회* 15, 379-392.
- 김민중, 2001,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한국가족법학회*, 15, 2, pp. 393-422.
- 김상용·이제수, 2005, “호주제의 사적 전개와 폐지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 *여성학연구*, 15(1), 147-156.
- 김성은, 2015, “젠더관점에서 본 자의 성·본 변경허가의 판단기준”, *법학연구*, 58, 301-319.
- 김연진, 2018, “스웨덴, 친부모가 아닌 동거인에게도 육아휴직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동향*
- 김용화, 2008, “가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개념의 통합 필요성”, *가족법연구*, 22(2), 1-28.
- 김혜경, 2012,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 비판적 가족담론의 변화: 비동성성의 동시성”. *가족과 문화*, 24(4), 166-195.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1), 7-41.
- 박복순·박선영, 200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7.
- 백승흠, 2014, “동성간의 결합과 혼인으로서의 동화 - 독일 LPartG의 혼인으로서의 동화과정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30(4), 241-268.
- 변수정·박종서·오신휘·김혜영, 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성미애, 2017,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및 호주제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일간지에 나타난 가족주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113-139.
- 소현숙, 2015, “가정법률상담소 설립과 호주제 폐지를 향한 기나긴 여정”. *역사비평*, 72-94.
- 신옥주, 2013,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 고찰”. *안암법학*, 43, 341-372.

- 신옥주, 2016,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1(2), 233-272.
-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73-128.
-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서울: 창비.
- 양현아, 2018,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62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위라점·배은경, 2017, “성·본 변경, 부계혈통주의 탈출은 가능할까”. 경계를 가로질러 가족 만들기. 시간여행.
- 위선주·배은경, 2013, “자녀의 성본 변경을 통해 본 부계가족의 정상성과 어머니의 지위”. 젠더와 문화, 6(1), 43-81.
- 여성부, 2003, 소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
- 여성부, 2005, 호주제 폐지 백서.
- 이새라, 2016,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성시제도의 법철학적 고찰: 자녀의 성변경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47, 405-440.
- 장경섭, 2010,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창비.
- 장진화·김영정·김혜영·장명선, 2017,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혜경·김영란·김소영·이아름·안경화·류연규·이한나, 2014,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미화, 2018,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방법 개정의 필요성”,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62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 서울: 당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13, 1-4.
- 행인·한상희, 2007, “호주제 폐지 그 이후 -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여성이론, 16, 14-37.
- 황인자·김영미, 2010,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젠더 거버넌스에 관한 담론”. 국가정책연구, 24(4), 123-146.
- 황정미, 2018, “한국인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황해문화 98. 16-36.
- 홍승아 외, 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윤선, 2014,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70-83.

언론 기사

이미영, ‘가족’, 외국선 어디까지 인정되나 - ‘가족’의 진화④: 나라마다 동거 제도 도입 배경 달라... 동성 결합은 여전히 논란거리. 법률신문 2015.07.07.

최금숙, 스웨덴 88년 동거인법 도입... 성과 관계 없는 동거인에도 적용. 2008.12.12.

백승호,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하기까지, 오마이뉴스, 2017.5.25.

황보람·박소연·이미영, ‘가족’의 진화. 머니투데이 2015.07.07

허완, 대만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5.24.

Abstract

Young Jeong Kim

Research Fellow,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Reanalyzing the Historical Incidence of Women and Family Policy: The Movement to Abolish *Hojuje* (Male-Head Family Registra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in Current Family Policies in South Korea.

After a movement lasting more than 50 years, *hojuje* (male-head family registr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2005. After its introduction to Korea following Japan's annexation of the country in 1910, *hojuje* was a symbol of the patriarchy of Korean society. Under *hojuje*, once a woman married she was taken from the register of her father and added to the register of her husband. Moreover, under *hojuje*, an infant boy could be named the head of the household and be given more rights with respect to family affairs than his mother or grandmother, as a priority of male rule. This resulted in many cases of unfair treatment of reconstituted families. A large numbe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the public criticized such an unfair system and organized anti-*hojuje* campaigns.

This pap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 to abolish *hojuje* and what the main themes of the movement mean for current family issues in Korean society. I analyzed the gender library "Here" (which is managed by the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collections and in-depth interviews I conducted with seven activists who played key roles in the movement.

The key issues of the movement focused on gender equality, discrimination against some family types, and lack of respect for the civil rights of individuals. Although the laws were improved, those issues remained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proposes to change the principle

of giving a baby the father's surname as a vestige of patriarchy, to respect diversity of family construction, and to develop policies for equality in families.

Keywords: *Hoku* system, Revision of family law, Women's movement, Family, Gender equality

부 록

1. 성평등도서관 외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2. 구술수집 관련 양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1. 성평등도서관 외 호주제 관련 자료 목록

표 부록-1 성평등도서관 외 호주제 관련 자료 목록(2018.03.13. 기준) -국회도서관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	현행법상의 가족제도의 존속가치: 민법초안의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 (법조. 6, 9·10.)	학술기사	1957.10	김주수/법조협회
2	신민법과 호주제도 (고시계. 4, 3.)	학술기사	1959.03	김주수/국가고시학회
3	신민법에 있어서의 호주제도: 신민법에 대한 해설과 비판 (법정. 14, 12.)	학술기사	1959.12	이희봉/법정사
4	현행호주제도 (사법행정. 6, 3.)	학술기사	1965.03	이희봉/한국사법행정학회
5	호주제도론 (사법행정. 14, 10.)	학술기사	1973.10	김주수/한국사법행정학회
6	호주제도론 (사법행정. 14, 11.)	학술기사	1973.11	김주수/한국사법행정학회
7	호주제도의 폐지론 (여성. 99.)	저널기사	1974.03	김주수/한국여성단체협의회
8	남자중심사상 유지 위한 관념적인 제도: 호주제도: 여성의 법적 지위 <특집> (주부생활. 112.)	저널기사	1974.07	이태영/주부생활사
9	호주제도의 존속과 인구조절의 문제점 (세계왕래. 90.)	학술기사	1974.08	김주수/세계사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0	호주제도의 폐지론: 가족법 개정요강 <특집> (여성. 104.)	저널기사	1974.09	김주수/한국여성단체협의회
11	가족법개정안 그 문제점: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을 중심으로 (여성동아. 84.)	저널기사	1974.10	배경숙/동아일보사
12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한 연구 (법정논총. 3.)	학술기사	1981.07	고정명/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13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 전통성과 도덕성에 관한 비판 <특집> (사법행정. 252.)	학술기사	1981.12	정동헌/한국사법행정학회
14	호주제도와 양호제도의 문제점: 사후양자와 이성양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문집. 1.)	학술기사	1982.01	배경숙/인하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5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81.)	학술기사	1982.10	전봉덕/대한변호사협회
16	전근대적 호주제도의 희생자들 (마당. 15.)	저널기사	1982.11	곽배희/마당
17	호주제도의 개혁과 인구정책의 동향 (여성연구. 1, 1.)	학술기사	1983.11	배경숙/한국여성개발원
18	호주제도존치론의 허구: 전통성과 도덕성에 관한 비판 (가족법연구. 1.)	학술기사	1984.06	정동헌/한국가족법학회
19	호주제도폐지론의 논거 (민사법학. 제7호.)	학술기사	1988.06.25	이희배/삼진인쇄공사
20	가족법 개정이 또한번 미루어진 이유 (2000년. 통권72호.)	저널기사	1989.04.01	윤현봉/현대사회연구소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21	한국가족법 개정운동의 쟁점분석과 개선방향: 호주제도 미풍양속론과 외래론의 대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23.)	학술기사	1989.06	양숙자/한국여성개발원
22	호주제도의 개정 (월간고시. 194.)	저널기사	1990.03	이희배/법학사
23	호주제도 개혁의 이념적 기초와 그 논거 (가족법연구. 4.)	학술기사	1990.08	이희배/한국가족법학회
24	개정민법상의 친족제와 호주제 1 (법무사. 283.)	학술기사	1991.01	박병호/대한법무사협회
25	개정민법상의 친족제와 호주제 2 (법무사. 284.)	학술기사	1991.02	박병호/대한법무사협회
26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8.)	학술기사	1994.12	양정자/한국가족법학회
27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1 (법조. 469.)	학술기사	1995.10	조대현/법조협회
28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2 (법조. 470.)	학술기사	1995.11	조대현/법조협회
29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민사판례연구. X VIII)	학술기사	1996.05.25	조대현/박영사
30	“아버지 피만 피가 아니다”: 국적법 개정 이은 ‘호주제 폐지’ 주장... 부계혈통주의 물락하는가 (한겨레21.177.)	저널기사	1997.10.09	이용인/한겨레신문사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31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아시나요? (민주노동당 대안. 제4호.)	저널기사	1998.01	김정미숙/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32	한국의 호주제도: 그 계보적 검토 (금산법학. 1.)	저널기사	1998.02	청목청/세창출판사
33	가의 계승과 호주제의 역할 (금산법학. 1.)	저널기사	1998.02	정기웅/세창출판사
34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여성. 366.)	저널기사	1998.09	고은광순/한국여성단체협의회
35	호주제는 ‘여성 죽이기’: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형... ‘민법의 성차별’ 심각 (시사저널. 472.)	저널기사	1998.11.12	장영희/예음문화재단
36	한국의 호주제도: 식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 (여성과사회. 10.)	학술기사	1999.05	양현아/창작과 비평사
37	인간존엄·양성평등의 헌법정신 외면한 「호주제」 (자유공론. 388.)	저널기사	1999.07	고은광순/한국자유총연맹
38	양성평등과 호주제 (자치광장. 98.)	저널기사	1999.10	김승환/전북의정연구소
3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자치광장. 98.)	저널기사	1999.10	하춘자/전북의정연구소
40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999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41	호주제도론 (비교사법. 11.)	학술기사	1999.12	이승우/한국비교사법학회
42	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젠더 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 1.)	학술기사	2000.06	양현아/한국여성학회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43	하루라도 빨리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기러기. 제36권 제7호 통권 397호.)	저널기사	2000.08.01	광배회/홍사단
44	“감옥 같은 생활에서 해방된 기분”: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 지나-잘 살다 싶으면 어느날 ‘굿바이’ (뉴스피플. 430.)	저널기사	2000.08.10	허남주/대한매일신보사
45	“세살 손자가 할머니의 호주...” 호주제 폐지운동 거세다: 선택 여지 없고 부계사회 모순타파 여성단체들 팔걸고 나서 (뉴스피플. 431.)	저널기사	2000.08.17	이진아/대한매일신보사
46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여성특위현안분석 제1호) 여성특별위원회	국회간행물	2000.08.21	국회사무처
47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세미나자료	2000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48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5회(1차)	국회회의록	2000.11.08	대한민국 국회/특별위원회
49	호주제 폐지운동 급피치 올린다: 111개 여성·시민단체 연대=국회 청원 이어 위헌소송 막바지 작업 (뉴스피플. 제9권 통권 442호.)	저널기사	2000.11.09	허남주/대한매일신보사
50	호주제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제시 보고 요지서	기록물	2000.12.28	국회사무처
51	친족법의 미래의 과제 (가족법연구. 제14권.)	학술기사	2000.12	최진섭/한국가족법학회
52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자료	2000	법무부
53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편제원리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가사조정. 3.)	학술기사	2000.12	이희배/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회
54	호주제도의 폐지 (민주법학. 19.)	학술기사	2001.02	김계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55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7회(1차)	국회회의록	2001.02.08	대한민국 국회/특별위원회
56	2000년 여성운동의 흐름 (여성과사회, 12.)	학술기사	2001.03	오장미경/창작과 비평사
57	호주제의 문제점 (사회비평, 28.)	학술기사	2001.05	이석태/나남
58	「호주제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안) 여성특별위원회	기록물	2001.08.01	국회사무처
59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과 그 대안 (동향과전망, 통권49호.)	학술기사	2001.여름	장미경/한국사회과학연구소
60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인터넷자료	2001	최대권/여성부
61	호주제, 왜 법의 심판대에 올랐나	멀티미디어자료	2001	KBS미디어
62	호주제폐지론	세미나자료	2001	발행처불명
63	가문에서 퇴출된 ‘엄마와 딸’: 종중에 반기 드는 여성 점점 늘어... 성 차별해법은 ‘호주제 폐지’ (시사저널, 통권623-624호)	저널기사	2001.10.04/11.	김은남, 차형석/독립신문사
64	21세기 평화와 평등의 가정을 위해 호주제 폐지가 1차 과제 (북제주여성21, 제2호.)	저널기사	2001.12	곽배희/북제주군
65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2	국회 여성위원회
66	친일과 반공으로 지켜온 그들만의 가부장제 (말, 통권 188호.)	저널기사	2002.02	박형숙/월간 말
67	‘호주제’폐지 논란: 가부장 의식이 만든 악법인가? 시사평론, 제1권 제4호 통권4호.	학술기사	2002.04	강원시사평론사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68	호주제도 존폐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제25회.)	학술기사	2002.04	양현아/민속원
69	페미니즘의 대중화: 몇가지 유형에 관한 가능성과 딜레마의 탐색 (한국여성학. 제18권 1호.)	학술기사	2002.06	이영자/한국여성학회
70	호주제, 그 심각성을 알리는 ‘부산여성의 전화’<인터뷰> (시민시대. 통권214호.)	학술기사	2002.08	김영련, 김희미/목요학술회
71	호주제 폐지, 그 이후의 대안 (시민시대. 통권214호.)	학술기사	2002.08	허지영/목요학술회
72	마이너리티의 목소리,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시민시대. 통권214호.)	학술기사	2002.08	김희미/목요학술회
73	가족법연구	단행본	2002	김상용/법문사
74	예산정책현안 분석보고서	분석보고서	2002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75	호주제도, 이 땅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대구사회비평. 통권 제5호.)	학술기사	2002.09.10	신박진영/문예미학사
76	호주제, 왜 ‘개선 보완’이 아니라 ‘폐지’인가 (당대비평. 제6권 제3호 통권20호.)	학술기사	2002.가을	변정수/삼인
77	헌법상 가족제도와 호주제도 (답수. 제31집.)	학술기사	2002.10	김영환/답수회
78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여성정책과 입법활동. 제1호.)	학술기사	2002.12	곽배희/국회여성위원회
79	끝나지 않은 성차별의 비극, 호주제	비디어 녹화자료	2003.04.05	추적60분/KBS미디어
80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고시계. 제48권 제5호 통권 555호.)	학술기사	2003.05	김상용/고시계사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81	혈통호적 가고 개인호적 온다: 호주제 폐지 대안으로 부각하는 가족부와 1인1적제 장·단점 (뉴스메이커. 제12권 제17호 통권 512호.)	저널기사	2003.05.01	정재용/ 경향신문사
82	현행법 개정 비용 얼마나 들까: 경비만 수백억원에 법률도 60~70개 고쳐야, “가족 해체 안 돼” 주장도 (뉴스메이커. 제12권 제17호 통권521호.)	저널기사	2003.05.01	김경은/경향신문사
83	호주제 폐지: 찬 “변화하는 가족 형태 반영 못해”: 반 “어떤 공동체도 기준은 필요”<대답> (월간중앙. 29권 6호 통권331호.)	저널기사	2003.06	남윤인숙, 최병철/중앙일보 J&P
84	호주제, 왜 난리인가?: 여성을 이등인간으로 못박아온 못된 도구, 호주제를 해부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제89호.)	학술기사	2003.07	고은광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85	호주제 폐지로 평등한 가족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족제도로 전환해야 (노동사회. 통권 제77호.)	학술기사	2003.07	남윤인숙/한국노동사회연구소
86	호주·성씨제도의 어제, 오늘 (통계. 제29권 제2호 통권 제57호.)	학술기사	2003.07	곽창권/ 대한통계협회
87	“호주제 폐지를 통과시켜라”: 법무부 폐지안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한나라·자민련이 압초... 유럽도 무섭게 반발 (한겨레21. 통권474호.)	학술기사	2003.09.04	이지은/한겨레신문사
88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한다: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정책포럼. 제3호.)	학술기사	2003.09	곽배희/한국여성개발원
89	호주제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법중개정법률안 (국회보. 통권443호.)	저널기사	2003.09	최석림/국회사무처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90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민법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19호.)	학술기사	2003.09	이승우/한국가족법학회
91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의 관련법령의 정비방안: 민법을 중심으로 (여성정책포럼. 제3호.)	학술기사	2003.09.15	이승우/한국여성개발원
92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위한 대안으로서 개인별신분등록제 (여성정책포럼. 제3호.)	학술기사	2003.09	조은희/한국여성개발원
93	“호주제 폐지는 이제 상식이죠”: 법 개정 위해 노력해온 일등공신들... 수년 동안의 땀과 눈물로 ‘결실 눈앞에’ (주간동아. 통권401호.)	저널기사	2003.09.11	김민정/동아일보사
94	자녀 성, 부부 합의로 결정한다: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되면...: 개별구성원 동등지위 확보, 재혼가정 자녀 성 변경 가능 (주간한국. 통권1989호.)	저널기사	2003.09.25	배현정/한국일보사
95	호주제폐지론의 문제점 (21세기광주·전남. 제67호.)	저널기사	2003.가을·겨울	정환담/ 광주·전남21세기발전협의회
96	호주제 폐지와 그 이후 대안 (복지동향. 통권 제60호.)	저널기사	2003.10	남윤인숙/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97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 I	연구보고서	2003	조은희/한국여성개발원
98	주요입법의견조사. 2003, 1-2	입법의견조사	2003	송영선/한국법제연구원
99	주요현안분석	국회활동자료집	200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100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2003	김성숙, 이승우, 이경희/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101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 호주제와 관련하여 (민족법학논집. 제4집.)	학술기사	2003.12	박기숙/ 민족법학연구소 법학연구회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02	호주제도 폐지론과 민법개정안 검토 (JURIST. 통권399호.)	저널기사	2003.12.01	정완/청림인터랙티브
103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을 촉진하는가 (시대정신. 제23호.)	저널기사	2003.12.15	신주현/시대정신
104	호주제 폐지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여성정책포럼. 제4호.)	학술기사	2003.12.15	조민경/한국여성개발원
105	호주제로 본 우리 시대 가족 이야기 '가족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1-2부	비디오녹화자료	2004	심야스페셜/MBC프로덕션
106	호주제폐지 등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부산법조. 제21호.)	학술기사	2004.01.31	장준동/부산지방변호사회
107	자유민주주의와 호주제: '시민'여성의 등장과 21세기 열린사회 만들기 (오늘의 동양사상. 통권 10호.)	학술기사	2004.03.01	박의경/예문동양사상연구원
108	호주제, 존폐의 갈림길에서 <좌담> (오늘의 동양사상. 통권10호.)	학술기사	2004 03.01	김원준, 양현아, 이승우, 이승환/ 예문동양사상연구원
109	호주제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오늘의 동양사상. 통권10호.)	학술기사	2004.03.01	이순구/예문동양사상연구원
110	호주제 유지의 이데올로기: 질서와 전통 (오늘의 동양사상. 통권10호.)	학술기사	2004.03.01	이숙인/예문동양사상연구원
111	호주제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동양사상. 통권10호.)	학술기사	2004.03.01	홍원식/예문동양사상연구원
112	2004년 여성부의 여성정책 방향 (여성정책포럼. 제5호.)	학술기사	2004.04.15	최성지/한국여성개발원
113	호주제폐지의 논쟁과 전망 (여성과사회. 제15호.)	학술기사	2004.05	김경희/한국여성연구소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14	열린당은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 직접민주주의, 분배·친노사회주의적 경제정책, 호주제 폐지안 추진... 대한민국의 근간을 수술대에 올릴 듯: 4·15 총선 이후의 세상 (월간조선. 25권 5호 통권290호.)	저널기사	2004.05.01	백승구/월간조선사
115	“호주제, 이제 없앨 때” (NEXT. 통권9호.)	저널기사	2004.07.01	고은광순/월간NEXT
116	다시 불붙은, ‘호주제 폐지안’: ‘호주제 폐지’는 가부장제를 해체시키고, 양성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초 (n대한뉴스.)	저널기사	2004.07.01	임성은/n대한뉴스
117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전통가족제도인가? (법조. 제53권 제7호 통권 제574호.)	학술기사	2004.07.01	김상용/법조협회
118	“보육정책과 호주제 폐지 역점 추진”: 제17대 국회, 신임위원장에게 듣는다 (국회보. 통권453호.)	저널기사	2004.07.01	김애실/국회사무처
119	호주제 폐지, 17대 국회가 이루어내야 (국회보. 통권455호.)	저널기사	2004.09.01	김애실/국회사무처
120	호주제 폐지 등 민법개정 반대 성명서	의정자료	2004.11.17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121	호주제 만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단행본	2004	김성도/만주벌
123	민법(친족·상속편)개정에 관한 공청회	세미나자료	20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4	우리 가족의 행복한 선택!	자료집	2004	여성부
125	가족의 ‘진화’ 시작되는가: 호주제 폐진·부부재산제 도입 등으로 대변혁 예고 (시사저널. 통권796호.)	저널기사	2005.01.25	김은남/ 독립신문사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26	가족을 지키는 건 호주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현행 ‘호주제’는 전통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잔재 (복음과상황. 제155호.)	저널기사	2005.03.01	이정주/GN커뮤니케이션
127	호주제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족의 행복, 호주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성과정책. 통권 제17호.)	저널기사	2005.03.25	여성부
128	호주제 폐지: 지나간 여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국회보. 통권461호.)	저널기사	2005.03.25	차인순/국회사무처
129	호주제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참여사회. 통권 제101호.)	저널기사	2005.04	참여연대
130	반세기를 굶이쳐온 호주제 폐지 운동, 드디어 바다를 만나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참여연대. 통권 제101호.)	저널기사	2005.04.01	이구경숙/참여연대
131	호주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다 (여성우리. 통권 제27호.)	학술기사	2005.04.15	유순희/부산여성가족개발원
132	호주제 폐지에 함께 걸었던 그때 그사람들 (여성우리. 통권 제27호.)	학술기사	2005.04.15	이원경/부산여성가족개발원
133	호주제는 민족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의 잔재: 호주제 폐지운동의 흐름: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우리. 통권 제27호.)	학술기사	2005.04.15	김상용/부산여성가족개발원
134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1 (고시계. 제50권 제5호 통권579호.)	학술기사	2005.04.20	이은영/고시계사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35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가족정책: 양성평등의 '건강한 가족'출발: 편견과 차별 벗고 사람 존중의 가정으로 가는 길 (자유공론. 제40권 5호 통권458호.)	저널기사	2005.05.01	차인순/한국자유총연맹
136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2 (고시계. 제50권 제6호 통권580호.)	학술기사	2005.05.20	이은영/고시계사
137	민법 일부개정법률: 호주제 폐지, 친양자제도 신설 등 친족편 대폭 손질 (국회보. 통권463호.)	저널기사	2005.05.25	김성은/국회사무처
138	'정상가족'은 정상이 아니다 (여성과사회. 제16호.)	저널기사	2005.05.30	조주은/창비
139	호주제 폐지 과정과 새로운 신분공시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향하여 (국회도서관보. 제42권 제5호 통권 제313호.)	저널기사	2005.05.31	곽배희/국회도서관
140	호주제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차별의 굴레를 벗고 평등의 시대로 (새가정. 52권 통권568호.)	저널기사	2005.06.01	정자영/새가정사
141	호주제 폐지의 정책과정 (의정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19호.)	저널기사	2005.06.30	곽배희/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2	호주제 폐지, 새 역사의 장을 열다 (VOICE. 제17호.)	저널기사	2005.07.08	박진숙/보이스
143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가족법개정·새 호적체계의 방향 (인천법조. 제7집.)	학술기사	2005.12.22	이희배/인천지방변호사회
144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여성위원장 성명서	보도자료	200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145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대법원안)	보도자료	2005	대법원
146	호주제 폐지를 환영하는 국회 여성위원장 성명서	보도자료	200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147	2005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단행본	2005	이희숙/세창출판사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48	호주제 폐지 완결판, 개인별 신분등록법 (국회보. 통권471호.)	저널기사	2006.01.25	이경숙/국회사무처
149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과 개정가족법 개관 (가사조정. 통권제8호.)	저널기사	2006.02.28	이희배/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협의회
150	호주제 폐지, 올바른 신분등록제로 이어질까: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살려야 (네트워커. 제31호.)	저널기사	2006.03.03	진보네트워킹센터
151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가족’규정과 ‘가족’정책의 방향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11호 통권 제331호.)	저널기사	2006.12.31	유경희/국회도서관
152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	비디오녹화자료	2007	오정훈/푸른영상
153	호주제 폐지, 그 이후: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여성이론. 통권 제16호.)	학술기사	2007.05.15	행인, 한상희/여이연
154	호주제 폐지: 호주제 벽을 넘어 평등세상으로!	연구자료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55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 (담수. 제37집.)	학술기사	2008.10.14	권도혁/담수회
156	미국 평등권수정 운동과 한국의 호주제폐지 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4호.)	학술기사	2008.12	김경희/한국여성학회
157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연구	연구자료	2009	박복순, 박선영, 여성부
158	호주제 폐지... 그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제안을 중심으로	세미나자료	2011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미래포럼
159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 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제92호.)	학술기사	2016.02.29	이정선/서울역사편찬원

표 부록-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목록 <구술아카이브>

일련번호	사업명	구술자명	면담자	면담 일시	주요 색인어	시간
1	한국여성운동구술기록 3년차년도 사업(1980년대)	남인순	이남희	2015.10.29	인천 일하는여성의나눔의집,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 부모성함계쓰기운동, 여성평화의집, 여성미래센터, 성매매방지법, 여성의 정치세력화	1시간 57분
2	한국여성운동구술기록 3차년도 사업(1980년대)	고은광순	정영훈	2015.08.05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컴퓨터 통신 프라자, 1원 소송, 내제사안받기운동, 동학, 평화어머니	1시간39분 4초
3	한국진보여성운동 구술기록사업	이경숙	강남식	2013.03.10	가정환경과 성장환경, 직장여성 차별문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친일사관문제의식, 여성운동, 여성평우회, 조기정년제, 여성문화 공간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생협운동, 지역운동과 여성정치세력화, 미디어운동, 자녀양육과 여성운동, 성매매방지법, 호주제 폐지운동, 국회의정 활동	3시간34분 56초
4	한국진보여성운동 구술기록사업 (1)	권미혁	왕인순	2013.02.28	여성운동, 민주화청년운동연합, 남영동 대공분실, 여성평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세계여성의 날, 북경 세계여성대회	1시간42분 30초
5	한국진보여성운동 구술기록사업 (2)	권미혁	왕인순	2013.03.01	여성운동, 민주화청년운동연합, 남영동 대공분실, 여성평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세계여성의 날, 북경 세계여성대회	1시간15분 23초
6	한국진보여성운동구술 기록사업	지은희	이경숙	2013.03.19	여성평우회, 정대협,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부장관, 덕성여대총장	3시간03분 20초

표 부록-3 성평등도서관 외 호주제 관련 자료 목록(2018.03.14. 기준) -새가정 & 한국여성신학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	호주제도는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새가정, 4(10), 68-69.	저널기사	1957.10	이태영/새가정사
2	호주제도 새가정, 319, 74-75.	저널기사	1982.11	편집부/새가정사
3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새가정, 373, 64-65.	저널기사	1987.10	차명희/새가정사
4	[가족법 상담] 상징적인 호주제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새가정, 446, 108-109.	저널기사	1994.05	곽배희/새가정사
5	[여성] 손자가 할머니의 호주라니... 말이 됩니까? : 여성계, 호주제폐지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 새가정, 501, 126-127.	저널기사	1999.05	최진숙/새가정사
6	호주제 문제를 생각하며 새가정, 56-59.	저널기사	2002.05	곽배희/새가정사
7	부부평등을 저해하는 호주제 새가정, 52-54.	저널기사	2002.06	곽배희/새가정사
8	부부평등을 저해하는 호주제 새가정, 38-41.	저널기사	2002.07	곽배희/새가정사
9	미혼모 자녀와 호주제 새가정, 62-65.	저널기사	2002.09	곽배희/새가정사
10	호주제에 대한 편견 두 가지 새가정, 54-56.	저널기사	2002.11	곽배희/새가정사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11	호주제폐지 운동, 돌아보며 내다보며 새가정, 36-39.	저널기사	2003.12	이구경숙/새가정사
12	호주제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차별의 굴레 벗고 평등의 시대로 새가정, 62-67.	저널기사	2005.06	정자영/새가정사
13	아들을 위한 일곱 편의 습작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제언 한국여성신학, 39, 4-5.	저널기사	1999.09	전순란/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4	호주제 폐지로 평등한 가정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 한국여성신학, 42, 254-258.	저널기사	2000.06	편집부/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5	호주제의 부당함을 외쳐야 하는 이유 한국여성신학, 43, 168-178.	저널기사	2000.09	박인희/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6	기독교성 호주제 폐지운동 선포식 한국여성신학, 46, 227-233.	저널기사	2001.06	편집부/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7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찰 :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신학, 47, 10-26.	저널기사	2001.11	권미경/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8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 기원문 한국여성신학, 47, 127-132.	저널기사	2001.11	편집부/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기독교성문화제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성예배 한국여성신학, 49, 122-140.	저널기사	2002.06	편집부/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20	여신협 소식 한국여성신학, 49, 204-207.	저널기사	2002.06	편집부/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21	노란 손수건 : 호주제 폐지를 위하여 한국여성신학, 54, 4-8.	저널기사	2003.09	김관임/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일련번호	제목	형태	생산시기	생산자
22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 “호주제 폐지하여 평등가족 실현하라!!!” 한국여성신학, 54, 155-156.	저널기사	2003.09	편집부/한국여성학자협의회
23	호주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 : 호주제폐지 그물코로 여남 평등한 생명공동체를 한국여성신학, 54, 157-167.	저널기사	2003.09	편집부/한국여성학자협의회
24	[호주제 폐지 대국회 촉구 결의문]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한국여성신학, 54, 190-191.	저널기사	2003.09	편집부/한국여성학자협의회
25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렇게 변한다 한국여성신학, 60, 130-136.	저널기사	2005.03	편집부/한국여성학자협의회
26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에 대한 성명서 한국여성신학, 60, 200-201.	저널기사	2005.03	편집부/한국여성학자협의회
27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 새 세상이 열린다! 한국여성신학, 60, 202-203.	저널기사	2005.03	편집부/한국여성학자협의회
28	반세기 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폐지 환영한다! :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대안적 가족공동체를 만들자! 한국여성신학, 60, 206-207.	저널기사	2005.03	편집부/한국여성학자협의회
29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여성신학, 60, 208-210.	저널기사	2005.03	편집부/한국여성학자협의회

부록2. 구술수집 관련 양식

구술자 신상 기록부

사업명	여성정책사 현장 재조명: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 변화와 방향	면담자	
		면담일시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자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관련분야 및 주요약력	해당 연구/사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면담자 기록사항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구술수집사업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성별, 관련분야 및 활동사항 등을 구술자 신상기록부에 기재 [선택항목] 없음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됨.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로 함. 개인정보의 이용·보유를 거부하고자 할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예비 질문지

사업명	여성정책사 현장 재조명: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 변화와 방향	구술자명	
구분	질문 내용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와 역할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이전과 당시 소속·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와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 운동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운동의 전개	- 호주제 폐지 운동 주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호주제 폐지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달리 가졌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변곡점이 되었던 단계는 언제였습니까?		
운동의 쟁점	- 폐지 운동 진영 내부의 의견대립 또는 쟁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 폐지 운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운동의 의미	- 폐지 운동의 가장 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경험으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교훈이나 성과는 무엇입니까?		
운동의 현재적 의미	- 호주제 폐지 이후 변화를 느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재 가족정책 또는 담론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밖에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구술동의 및 자료활용·공개 동의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분야 활동에 기여한 다양한 분들의 경험을 구술로 채록·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술을 통해 여성의 기록화 활동에 관련된 기존 문헌자료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정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구술은 학계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선생님께 구술을 청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구술 자료 수집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구술 요청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사업명 :

구술자 성명 : (인)

면담자 성명 : (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귀중

부록3.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1

이름	곽배희	출생년도	1946년생
주요경력	2000.02~ 제3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여성신문 자문위원 대법원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973~19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구술요약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와 역할 -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 개소와 동시에 호주제 폐지 운동 시작. - 가정법률상담을 받으면서 법의 한계를 느끼고 가족문제를 가족법에 의거,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족법개정 운동 시작. - 가정법률상담소의 목적사업 자체가 가족법 개정이며 성평등 문제의 근간에 호주제가 존재. ○ 운동의 전개 -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가족법 강의. - 가족법 강좌를 통하여 전 생애를 걸쳐 개인의 삶에 법이 연관되어 있음을 의식화. -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강의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대중의 의식변화로 대중적 호주제 폐지 운동의 외연확대와 연대 가능. ○ 운동의 쟁점 및 애로사항 - 기득권의 인정과 포기에 대해 저항하는 남성 문화. - 시민들의 인식수준보다 법제도가 후진적이었던 상황. ○ 운동의 특징 -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나아갔던 연대 운동. - 이상적 아이디어와 현실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했던 운동.		

	○ 운동의 현재적 의미 - 호주제 폐지는 뿌리만 뽑힌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가치를 처내는 작업은 현재 진행형. - 부성주의 잔재 해결 필요. - 현실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수용 필요. - 현재 가족법 관련 주요 현안은 부부재산제, 비혼모 지위 개선, 상속(배우자선취분) 문제.
기타 (경험과 사회를 중심으로)	○ 상담소는 가족문제를 전문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함. 내담자들이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결 방법을 물었을 때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에 의거하여 답변을 해주는데, 최선의 답변을 하려다 보니 법이라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음. 법률기관으로서 법을 넘어서는 해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했고, 호주제야말로 남녀평등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의 뿌리에 해당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운동이 필요했음. ○ 상담소 활동의 특성으로부터 ‘법과 삶’, ‘법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운동 동력이 되었음. 모든 영역의 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친족상속에 관한 법은 개인의 인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실제로 남녀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타 여성/시민운동단체와 달리 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 개정을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앞장서서 호주제 폐지운동을 해왔음. 법 개정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고 봄. ○ 개인의 삶을 보자면 가족 내에서 특별한 차별을 겪는 경우는 아니었으며(호주제폐지 반대 진영에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억압의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 오로지 객관적으로 여러 여성들이 처한 억압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음.

구술자 소개 2

이름	지은희	출생년도	1947년생
주요경력	2016.06~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희망제작소 이사 2009.03~2013.02 제8대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2006.02 제7대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2003.02~2005.01 제2대 여성부 장관 2000.0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1999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999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99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1983 여성평우회 공동대표		
구술요약	○ 참여 동기와 역할 - 호주제는 한국 가부장제의 핵심으로서 호주제 폐지는 당시 최고 우선순위의 과제 ○ 운동의 전개와 특징 - 기존 가족법 개정 운동이 소규모, 로비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1990년대 후반 본격적 호주제 폐지 운동은 대중운동으로서 시위와 문화운동으로 전환 - 운동주체와 환경: 기획력, 집행력, 영향력을 가진 여연, 의식있는 여성기자, 단체 출신 여성의원의 힘, 여기에 진보적인 정부가 뒷받침 - 기획된 운동으로서 공략지점 설정, 참여자 확대 등을 철저하게 계획한 운동 - 운동단체와 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이해로 극복 ○ 성과와 한계 - 남성 가계계승 약화, 민주적 가족으로의 전환을 이룬 것이 호주제 폐지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 급변하는 가족의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처가 부족했던 점이 한계		

기타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 90년대 초 여성 운동 지도부들이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음. 방문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이론에 국한된 운동이 아닌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이후 제도 개선 운동이 갖는 의미와 장점, 현실에 바탕을 둔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만들어짐. ○ 호주제는 한국 가부장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인데 선배들이 행해왔던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접근방식이 지나치게 온건하고 로비중심이었다는 판단을 했고,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됨. 운동주체 역시 소규모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여성단체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를 만들고 여성계 밖으로 더 확장하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게 됨. 당시에는 이른바 보수 인사 중에서도 여성운동에 대한 상당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된 이들이 있어 많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었음. ○ 운동은 ‘기획’임. 호주제 폐지 운동은 참여자 확산 방법, 논쟁 및 공략지점 선정, 대응전략 수립을 포함한 기획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적으로는 운동사에서 아주 의미있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함. 장관 재직 시절 여성운동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함. 여성운동계에서 제도권으로 진출할 때 비판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를 잘 끝냈다는 점에서 임기 후 환영받은 경험이 매우 소중한.
----------------------------------	--

구술자 소개 3

이름	이석태	출생년도	1953년생
주요경력	2011.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8.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04.~200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03.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2000.~200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1999.~2001.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1992~1993.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1989.~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구술요약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와 역할 - 민변 소속 변호사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상담 진행 등 인권, 공익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성평등적 관점에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 호적등본은 이름만으로 타인의 조회 가능하여 개인정보(이혼, 재혼, 투옥 기록 등) 보호 문제 있었음. - 2000년부터 폐지까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재판 총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 역할. ○ 운동의 전개 -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쾌하게 활동(예: SNS를 활용한 호폐모 활동, 연예인 참여 및 홍보). - 정부의 호주제폐지 친화로의 방향 전향과 더불어 대중의 공익적 놀이마당으로 진화. 진보적 정부라는 환경조성보다 운동주체의 역할이 더 컸다고 봄. - 다양한 운동방식과 많은 단체들의 연대가 호주제폐지 운동의 주 특성. - 가족구성원 간 평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 제시. - 운동의 변곡점 내지 상승 단계로 소송을 들 수 있음. 소송은 승패가 있다는 특성,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운동의 쟁점 - 대안 중 여러 모델이 제시되어 개인의 정보 존중에 대한 여러 의견 존재로 의견 차이 존재.		

	○ 성과와 한계 - 제도적으로 가정 평등, 여성의 활약 증가, 남성의 의식 변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한계점은 현재의 미투운동이 시사. 제도의 변화가 모든 남성의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음. - 다양한 가족 및 동거 커플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파트너 관계 보호 필요). - 동성 결혼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
기타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 호주제에 대한 관심은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가정법률상담소 무료상담자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동성동본 금혼폐지 헌법제청을 했고, 호주제도 유사한 방식으로 도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변에서 맡아 총괄. 원고 모집 등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맺으면서 활동: 소장 작성, 증거 작성, 연구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킹. 당시 합숙을 할 정도로 작업과 연대활동의 강도가 높았음. ○ 이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운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호주제 폐지는 불가능했음. 재판은 변호사 몇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운동을 대중적으로 해야 가능한 이슈. 당시 운동은 매우 유쾌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함. ○ 힘들었지만 폐지라는 결과를 낳았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으므로 참여자 개인으로서 명예롭게 생각. 이후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운동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승리적 경험의 중요성 인식.

구술자 소개 4

이름	고은광순	출생년도	1955년생
주요경력	2011.01~ 솔빛한의원 원장 2004.04 제20대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감사 2004 저서 「한국에는 남자들만 산다」 2003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1999 저서 「어느 안티미스코리아의 반란」 1998.11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발족 1997 ‘남녀 성비 불균형과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구술요약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와 역할 -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가족 내 직접적 차별 및 한의사로써 남아선호와 여아낙태 실태를 접하며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인식 - 여성들이 시기에 종속되는 근본 문제가 호주제에 있다고 판단하여 호주제 공부 시작 - 남아선호와 관련한 경험에 대해 여한의사들 대상 설문조사 실시 - 호폐모 결성 및 호폐연 참여 - 호주제 폐지를 촉진하는 서명운동, 책 집필, 홍보물 제작 등으로 활동하며 주로 컴퓨터 통신을 통한 게시글 작성 및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 시작 ○ 운동의 전개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특징은 PC통신을 이용했다는 점. 온라인 상의 관계망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 상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부하며 시민 모임 결성 - 호주제는 제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의 문제임을 인식하며 ‘내 제사 거부’ 선언 -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에 우호적 환경 조성 ○ 운동의 쟁점 및 어려움 - 대안적 신분등록제 관련한 운동 내부 의견 차이 - 부모 성 함께 쓰기에 대해 남성들의 조롱 및 제사 거부에 대한 따가운 시선		

	○ 운동의 현재적 의미 - 성씨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실제 호주제 폐지 효과와 관련하여 여아낙태(영아성비)에 대한 longitudinal 연구 필요 ○ 운동의 성과와 한계 - 가장 큰 성과는 제도적인 차별이 사라진 것 - 남성우월주의가 약화되고 ‘딸 바보’라는 표현 등장 - 제도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남아있는 문화를 계속 변화시켜야 함
기타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문제인식은 1남4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나 장남에 비해 차별을 겪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감. 딸들이 식재료를 다듬으면 결국 오빠의 반찬이 되는 경험을 기억함. 대학에서는 군부독재에 항의하는 학생운동을 하다 요시찰 인물이 되고 제적되어 진로를 모색하던 중 한의사가 되기로 결심. 한의사로 일하면서 ‘아들 낳는 약’을 지어달라는 여성들을 접하게 되고 이 문제의 근본이 호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호주제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음. 한편으로는 하이텔 플라자에 사회문제에 대한 게시글을 연재하면서 일종의 팬층을 형성하고 논쟁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부모성 함께 쓰기 초창기에 참여하면서 보수적 남성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함. 호주제에 관해서는 기사와 서적, 뜻있는 법조인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지적 영향을 받았음 ○ 이른바 단체 중심의 운동조직과는 다른 시민모임을 주도하면서 연대체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던 타 단체들과 의견차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대안적 신분등록제 논의에서 1인1적을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이 그 예. ○ 제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과격한 페미니스트로 인식되어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음. 현재 미투 운동 등과 같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대 여론의 탄압과 조롱을 받는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느낌 ○ 현재는 동학과 여성, 평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중임

구술자 소개 5

이름	양현아	출생년도	1960년생
주요경력	2011.01~2014.01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09.03 제3대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소속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여성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05.12~2007.09 한국젠더법학연구회 운영위원장 2003.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0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남북한공동기소단 검사		
구술요약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와 역할 - 식민지부터 근대까지 한국 가족법의 성 차별성 및 식민지성에 대한 박사 논문에서 호주제에 대해 다루게 됨 - 98년 귀국 이후 호폐모 참여를 하며 본격적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 시작 - 호주제에 대해 연구자, 학자로 관련 연구 발표 - 호주제에 대한 현재 재판에서 폐지 주장 측 참고인으로 진술 - 2003년 법무부 산하 가족법 특위 참여 ○ 운동의 전개 - 호폐모에서는 이혼, 재혼 등 소위 “비정상가족” 여성의 피해 사례들이 쏟아지며 공감대 확산 - 국민들의 전폭적지지 및 노무현 정부 집권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시 움직임 시작 ○ 운동의 쟁점 - 대안 신분등록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 - 가족법 특별위원회 내에서 자녀의 성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견차이 - 가족법 특별위원회 내 대안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에서 의견 차이		

	○ 운동의 현재적 의미 - 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내, 조직 내에서도 성 평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미투 운동은 젠더, 섹슈얼리티에서의 민주화운동이라 생각 - 정상가족 규범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가족이 교육, 노동시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교육평등에 비해 노동시장 불평등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성과와 한계 - 한국 법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 운동의 가장 대표적 운동으로 50년간 지속됐다는 의의 - 공식적으로 호주제를 성 차별제도로 선언한 점에서 의미 - 식민지성에 대해 역사 법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 - 호주제의 전통성에 대해서 애매하게 풀이했다는 한계 - 정상가족 규범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한계 - 자녀의 성 문제에서 성 평등은 아직 달성되지 못한 한계
기타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으로 성차별성과 식민지성이라는 차원에서 호주제도 문제를 다루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귀국과 동시에 호주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하였음. 이것이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의 계기. 호폐모 멤버로서 운동하면서 당시 서너살쯤이었던 아이와 무대에서 춤도 추었던 기억이 나며, 논문 내용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연구자로서 호주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되면서 ‘호주제박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함. ○ 호폐모는 90년대 말 운동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직접 대면 없이도 온라인에서 의견수렴이 가능했다는 점, 특히 여성들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다고 봄. 싱글녀들, 이른 바 정상가족이 아닌 여성들이 ‘내가 이혼녀고 재혼녀다’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일종의 커밍아웃이라고 봄. ○ 개인사와 사회사가 매우 밀접하게 엮여 발달이 되었다고 생각함. 90년대 매우 중요한 운동사적 사건들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 너무나 힘들고 공격도 많이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놀라운 행운의 경험이었음. 에이전시가 되어 위안부 증언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내는 일, 호주제 폐지하는 데 식민지성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발화자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좋은 인권변호사들을 만나 자매애를 쌓을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라고 여김.

구술자 소개 6

이름	오혜란	출생년도	1960년생
주요경력	2018.04~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아시아 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상임이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캄보디아 코디네이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 센터장 2000.~2004. 16대 국회의원 이연숙 보좌관 1998.~200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구술요약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와 역할 - 2000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년 간 사무총장 -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북경 여성대회 등 여성단체연합 등과의 연대에 이어 호주제 폐지 운동도 함께 참여 ○ 운동의 전개 - 여성단체들 사이의 차이는 있었으나 연대와 역할분담 적절 - 여성계 대표자들의 제도권 진출로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의 조화를 통한 법안 통과 ○ 운동의 쟁점 - 전근대적인 남아선호사상의 근간인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어 작은 저항은 있었지만 큰 흐름은 지속 - 큰 해결책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던 사안이기에 과연 호주제 폐지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 ○ 성과와 한계 - 가족 내 남녀 평등한 관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의미 제시 -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문화(가족 내 남성중심 문화, 직장 등에서 만연한 성희롱 등) 개선 필요		
기타	○ 16대 국회에서 여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하나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 이후 여성운동계 출신 여성부장관과 인권변호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들어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문제의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셈임. 특히 기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법무부도 장관의 의지로 인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존재, 여성국회의원들의 의지, 엔지오에서의 수십년에 걸친 요구가 한 시점에 모여 개정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봄.		

구술자 소개 7

이름	이경숙	출생년도	1956년생
주요경력	2015.0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04.05~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3.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999.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술요약	○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동기와 역할 - 한국여성민우회와 여연 공동대표. 호주제 폐지를 99년 주요사업, 2000년 중점 사업으로 선정. - 16대 국회에서 소수의 여성국회의원으로 인한 호주제폐지 추진 어려움을 인식,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시작 후 17대 국회에 들어감. - 호주제 폐지를 열린우리당 내 당론으로 만들고 국회 내 활동 ○ 운동의 전개 - 모든 유효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호주제 폐지운동 진행(토론회, 시위, 남성 동참유도, 국회의원 설문조사, 연극 등). - 호주제 피해 사례 상담전화를 통해 재혼 가정의 피해 등을 접수. - 17대 여성의원들의 숫자 증가 및 당을 초월한 여성의원들의 호주제폐지 합의. - 미디어 영향(드라마 '노란손수건')으로 대중적 파급력. - 전문가들의 적극적 동참(연구자들의 이론적 뒷받침과 변호사들의 법적 활동 진행). ○ 운동의 쟁점 - 운동의 우선순위와 진행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 논쟁. -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논쟁. ○ 성과와 한계 -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은 성과. - 가부장제는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에 시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현		

	재 미투 운동이 나옴. - 한국사회에서의 강력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극복될 필요 있음. - 가족을 정서적 유대가 아닐 혈족관계로 보는 프레임이 남아 있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및 비인정으로 인한 피해사례 존재. -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남성우월주의 개선 필요.
기타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 16대 때 호주제 폐지를 위해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여성단체에서 힘을 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음. 당시 방청을 위해 갔었는데 여성은 없었고 남성 의원들이 본인들은 페미니스트인데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 당시 여성운동계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 여성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을 요구. 그렇게 목적의식적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염두에 두고 국회에 입성함. ○ 당시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 ‘여성들이 좀 남성들과는 다르게 정치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정치 개선을 도모하는 분위기였으나 당론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달라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음. 그러나 호주제 폐지는 다 함께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한나라당 여성의원들도 동의함. ○ 유효한 수단은 총동원했던 운동이었음. 예를 들면 UN에 상황을 알려서 유엔 [UN]에서 권고를 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아낸 것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음. 당시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결론을 보지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 ○ 호주제 폐지 운동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는, 힘든 운동일수록 빨리 혼자 가는 것 보다는 늦더라도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교훈. 어떤 운동이든 반대 세력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 변화와
방향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김영정
발행일 2018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